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1분기

Vol. 14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전문가와의 만남

- 육군 예산차장 안병희 준장 인터뷰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개정 · 공포
- 국제공공부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18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재정통계 동향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2017회계연도 상장공기업 결산
-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기고문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배원기 연세대 교수)

센터 동향

-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18년 2차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 2018년도 기본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육군 업무협약 체결
-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착수보고회 개최

- 2017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교육 실시
-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발간
-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발간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
- 목요세미나 「북한경제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 회계연구」 개최
-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2018년 1분기 IPSASB 정례 회의 출장 후기

- 출장개요
- 주요내용 요약
- 향후계획

공지사항

-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 홈페이지 이용
-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1분기

Vol. 14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전문가와의 만남	2
① 육군 예산차장 안병희 준장 인터뷰	2
02. 국가회계 동향	7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개정·공포	7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8
03.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11
①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11
② 2018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13
04. 재정통계 동향	20
①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20
②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32
③ 2017회계연도 상장공기업 결산	34
④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37
05. 특집	38
①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38
06. 센터 동향	45
①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45
② 2018년 2차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46
③ 2018년도 기본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47
④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업무협약 체결	47
⑤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착수보고회 개최	48
⑥ 2017회계연도 회계결산교육지원단 교육 실시	50
⑦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발간	51
⑧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발간	52
⑨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	52
⑩ 목욕세미나 「북한경제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 회계연구」 개최	53
⑪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54
07. 2018년 1분기 IPSASB 정례 회의 출장 후기	58
① 출장개요	58
② 주요내용 요약	59
③ 향후계획	70
08. 공지사항	71
①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71
② 뉴스레터 이용	72
③ 홈페이지 이용	72
④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73

01

전문가와의 만남

1 육군 예산차장 안병희 준장 인터뷰

- 일시 : 2018.3.23(금) 15시
- 장소 : 계룡대 본청
- 진행 :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 정리 : 오예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학력

- 1988. 육군사관학교 전산통계학 학사
- 2007.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15. 충남대학교 합동고급정책전문가 과정 수료
- 2016. 국방대학교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수료
- ~ 2018.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 경력

- 2016.11. ~ 현재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예산차장
- 2014.12. ~ 2016.11.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예산운영과장
- 2013.01. ~ 2014.12. 제2작전사령부 관리참모처 회계과장
- 2011.01. ~ 2013.01. 특수전사령부 관리참모
- 2008.11. ~ 2011.01. 육군본부 전력기획관리참모부 예산통제총괄장교
- 2007.11. ~ 2008.11. 육군본부 전력기획관리참모부 부대활동예산통제장교
- 2006.09. ~ 2007.10. 11군단 관리처 예산장교
- 2005.04. ~ 2006.09. 50사단 경리부 경리참모

금번(2018년 1분기 Vol.14)에는 육군 예산차장 안병희 준장과의 인터뷰를 담았음

가. 육군의 재정 관련 질문

Q1. 육군의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떠하며, 육군의 예산 절감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 5년간 육군 예산은 병 봉급인상 등 인건비의 대폭 상승('14년 4.2% → '18년 11.2%)으로 인해 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압박이 심화('14년 5.8%→'18년 0.7%)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육군은 대규모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필요한 위장크림 1개만 구매해도 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기본품목 1개만 추가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18년 육군 예산(14.8조원)은 전투부대 기본유지비만 65%(약 9조원)를 차지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육·해·공군 병력비율을 고려할 때, 육군의 병력은 타군의 약 7.5배인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타군의 약 2배, 전력운영비는 타군의 약 5배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타군과 비교 시 육군의 재정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은 연 2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비호 도입 육안 조정기 정비기술 개발」 등 3건이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에 채택되어 총 11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과장 주관으로 야전부대 재정관리 책임자로 처음 임명된 재무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청렴패 수여를 통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과 규정에 의한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육군 차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2.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상 어떤 유형의 재무정보 데이터가 산출·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재무정보는 크게 자산, 부채와 같은 재무상태 정보와 수익, 비용과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정보는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산출되거나(중기·편성·운영·자금·수입·지출·채권·채무 등) 타 자

원관리정보체계(군수, 시설, 조달, 급여, 인사정보체계 등)에서 전송받은 데이터가 국방통합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거래 전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통해 부대별, 유형별 자산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부대유형별 평균 운영유지비 현황, 시설·장비 노후도 분석 등을 통해 국방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육군 지휘관/관리자들의 주된 정책결정사항은 무엇이며, 정책결정 시 참고할 목적으로 어떤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정책사업은 예산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예산확보가 정책의 성패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인 셈입니다. 따라서 지휘관/관리자들은 해당 부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정성적, 정량적 재무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예산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군수와 시설분야 관련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품목별, 시설별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화 비율과 소모성 비율도 중요한 재무정보입니다.

또한 각 군의 공통분야 사업 간 비교 시에도 시설 노후도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시설은 넓은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산재해 있고, 해공군은 기지 단위로 집중적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보수유지비 예산이 육군에 많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육군 입장에서 상대적인 시설 노후도는 육군 시설의 열악성을 대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지휘관 및 관리자들은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육군예산처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예산차장 안병희 준장 인터뷰(3.23.), 계룡대 본청〉

Q4. 육군 지휘관/관리자들의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A. 솔직히 전투임무가 우선인 육군 지휘관들은 발생주의 재무정보라는 용어를 평상시에 접하기 힘들습니다. 야전부대 참모장 즉, 회계책임관이라는 직책에 임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가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다보니 전공하였거나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군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업무협약 체결 관련 질문

Q1. 지난 '18.2.7.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육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향후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A. 육군은 '12년 국가회계제도 정착 후 수년간 국방 재무정보를 축적하고 자료를 누락 없이 입력한 결과, 99.9% 수준으로 자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방경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육군은 현재 국방통합재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15개의 DW(Data Warehouse)를 기본 자료로 시설자산 및 전투장비 노후도 분석, 수리부속·유류·교탄 소모율 분석, 예산집행률 분석 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 재정정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기법과 활용방법을 발굴해 나갔으면 합니다.

Q2.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어떤 분야에 대하여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육군 예산획득 논리작성 및 사업설명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Q3. 육군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육을 제공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재정실무자들은 국방부 나라배움터(인터넷)에서 2주간 국가회계 이론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 종합행정학교(재정병과 교육기관) 교과목으로 국가회계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육군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계를 어려워하는 군인들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재미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공통 질문

Q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육군에서 개최한 『2017년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를 계기로 인연을 맺어 '18년에는 재정 정보 활용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그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축적된 연구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올 한해 성과 있는 육군 재정정보 활용방안 공동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02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개정·공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4개 국가회계예규가 3월 5일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7년 결산 시 이슈가 되었던 부분과 국가회계기준 선진화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을 취합하여 개정사항을 검토하였으며, 2017년 12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마치고 2018년 3월 5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4개 국가회계예규가 개정·공포되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비화폐성 외화자산·외화부채의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하고(제47조), 타 회계기준과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우발상황’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용어 및 체계를 정비(제50조)하였다.

국가회계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및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자산의 최초 인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개정·공포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를 반영한 2018년판 『국가회계편람』을 2/4분기에 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¹⁾

가. IPSASB, 공공부문의 새로운 리스 회계처리 모형 제안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8년 1월 31일에 공개초안 64, '리스'(이하 'ED 64')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ED 64는 '단일 사용권 모형(single right-of-use model)'을 적용한 리스 회계처리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IPSAS 13, '리스'에서 규정한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모형(the risks and rewards incidental to ownership model)'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D 64는 리스이용자에게 단기 리스와 저가치 리스²⁾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IFRS 16³⁾, '리스'와 동일하게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리스제공자에게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ED 64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모형(the risks and rewards incidental to ownership model)'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IFRS 16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 리스대상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측정한다(관련된 IPSAS 적용).

(나) 리스계약의 결과로 리스채권과 리스부채(선수수익)를 인식한다(단기 리스는 제외).

ED 64의 이러한 제안사항들은 통상적인 공공부문의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ED 64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모두 시장보다 저렴한 조건의 리스를 의미하는 소위 "할인 리스(concessionary leases)"에 대해 공공부문에 특화된 새로운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할인 리스 등 리스 거래는 공공부문과 국제기구에 매우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2) 저가치 리스(low-value leases): 기초자산의 가치가 낮은 리스를 의미

3) IFRS 16은 IAS 17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다. ED 64는 IPSASB가 IFRS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IFRS 16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IAS 17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IPSAS 13을 대체할 예정이다.

중요한 재원조달방식이다. 이번 ED 64의 제안사항들은 리스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 관리와 관련된 실체의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PSASB는 ED 64에 대한 의견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8-01/ipsasb-proposes-new-lease-accounting-model-public-sector>

나. IPSASB, 2019-2023 전략 및 업무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중

2018년 2월 5일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IPSASB 전략 및 업무계획(안)에 관한 논의자료(Strategy and Work Plan 2019-2023 Consultation Document, 이하 ‘전략 및 업무계획(안)’)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전략 및 업무계획(안)은 공공재무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이하 ‘PFM’)의 개혁을 위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이하 ‘IPSA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 전략적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전략 목표 (Strategic Objective)	“발생주의 IPSAS의 도입 확산을 통해 국제적으로 PFM을 강화한다.”				
주요 활동 영역 (main areas of activity)	전략 목표는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다음의 두 가지 활동 영역을 통해 달성한다.				
	공공부문을 위한 IPSAS와 기타 고품질의 재무보고 지침의 개발			IPSAS 및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른 효익에 관한 인식의 제고	
전략적 주제 (Strategic Themes)	Theme A: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에 관한 기준서 제정	Theme B: IFRS와의 정합성 유지	Theme C: 이용자의 폭넓은 재무보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침 개발	Theme D: IPSAS 도입 및 시행의 촉진	Theme E: 발생주의의 PFM 강화 효익의 옹호

이 밖에도 전략 및 업무계획(안)은 공공부문 회계의 중요 분야에 관한 기준서를 개발하기 위해 천연 자원, 할인율, 차등 보고(differential reporting) 이상 세 가지의 주요 공공부문 특화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들이 광범위한 구성원들에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커다란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IPSASB는 전략 및 업무계획(안)을 통해 적절한 경우 IFRS와의 정합성 유지, IPSAS의 도입 촉진을 위한 협업 및 PFM의 강화와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IPSASB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공부문 특유의 재무보고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준서 개발에 초점을 계속 맞출 것이다. 하지만, 제안된 전략은 IPSAS 도입이 커다란 효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발생주의 보고가 PFM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IPSASB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및 업무계획(안)은 구성원들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IPSASB의 전략 목표와 이를 지원하는 주제들, 업무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논의자료에 대한 의견은 2018년 6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8-02/ipsasb-consults-2019-2023-strategy-and-work-plan>

03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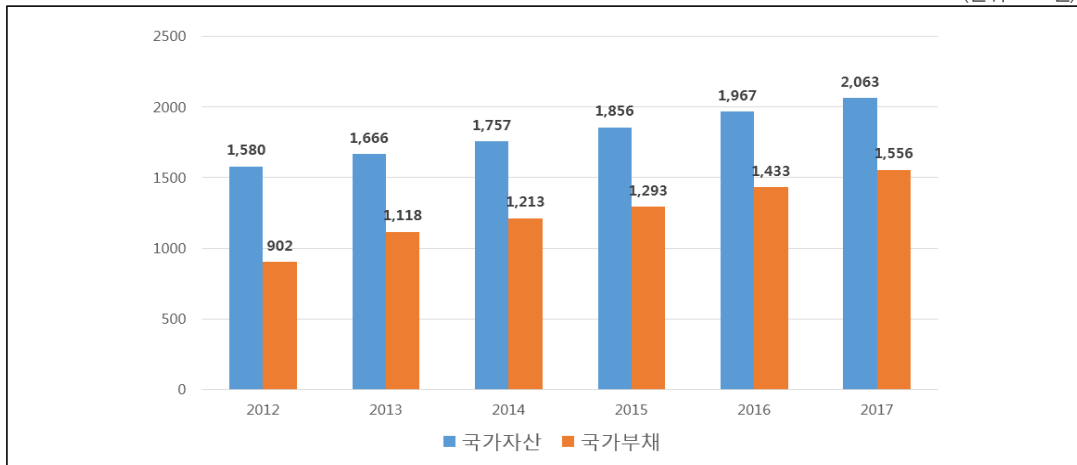
1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18년 3월 26일 발표하였다. 국가결산 결과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6.4조원 증가한 2,063.2조원, 부채는 할인을 하락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2.7조원 증가한 1,555.8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07.4조원이다.

2017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0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96.4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27.7조원, 투자자산 58.4조원, 일반유형자산 3.6조원, 사회기반시설 6.7조원, 무형자산 0.3조원 증가와 기타비유동자산 0.3조원 감소 때문이다. 2017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8.1%와 26.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1% 순이다.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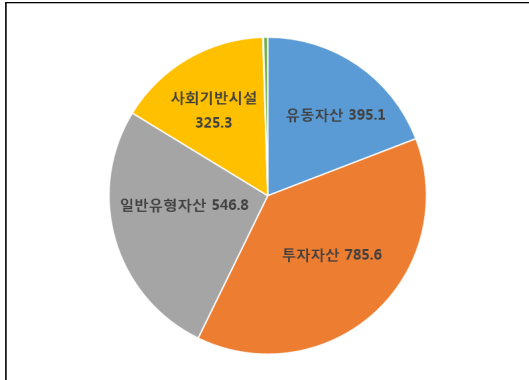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출처: 2012~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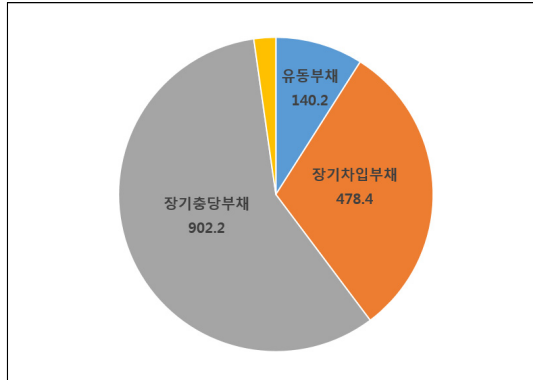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 조원)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229.1조원, 현금및 현금성자산 49.3조원, 단기금융상품 32.0조원 등 총 395.1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539.0조원, 장기대여금 138.8조원 등 총 785.6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39.8조원, 건물 64.0조원 등 총 546.8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92.1조원, 철도 38.5조원 등 총 325.3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4조원 등 총 1.6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5.3조원 등 총 8.8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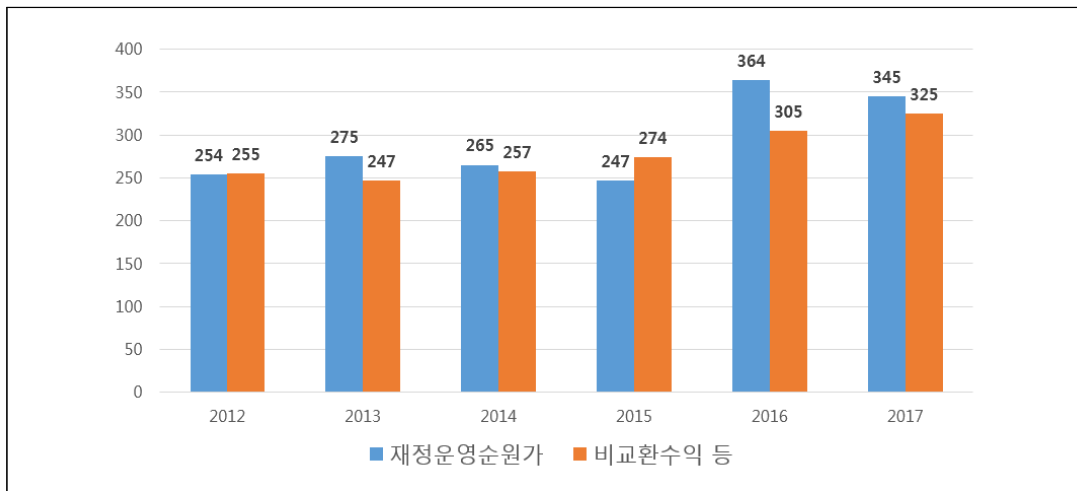
2017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555.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2.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충당부채 96.3조원, 장기차입부채 21.9조원, 유동부채 3.3조원, 기타비유동부채 1.2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8.0%, 장기차입부채는 30.7%, 유동부채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66.6조원, 유동성장기 차입부채 54.4조원 등 총 140.2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63.8조원, 공채(자기 공채 차감) 11.1조원 등 총 478.4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902.2조원은 연금충당부채 845.8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47.9조원, 기타 8.5조원(보충충당부채 4.8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35.0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3.9조원, 장기미지급금 11.1조원이다.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18.7조원이 감소한 344.8조원이다. 국세수익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환수익 등은 325.0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9.8조원이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 조원)



출처: 2012~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 2018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국가회계교육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전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집합교육인 국가회계전문교육,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사이버 강좌 등 수강생 중심의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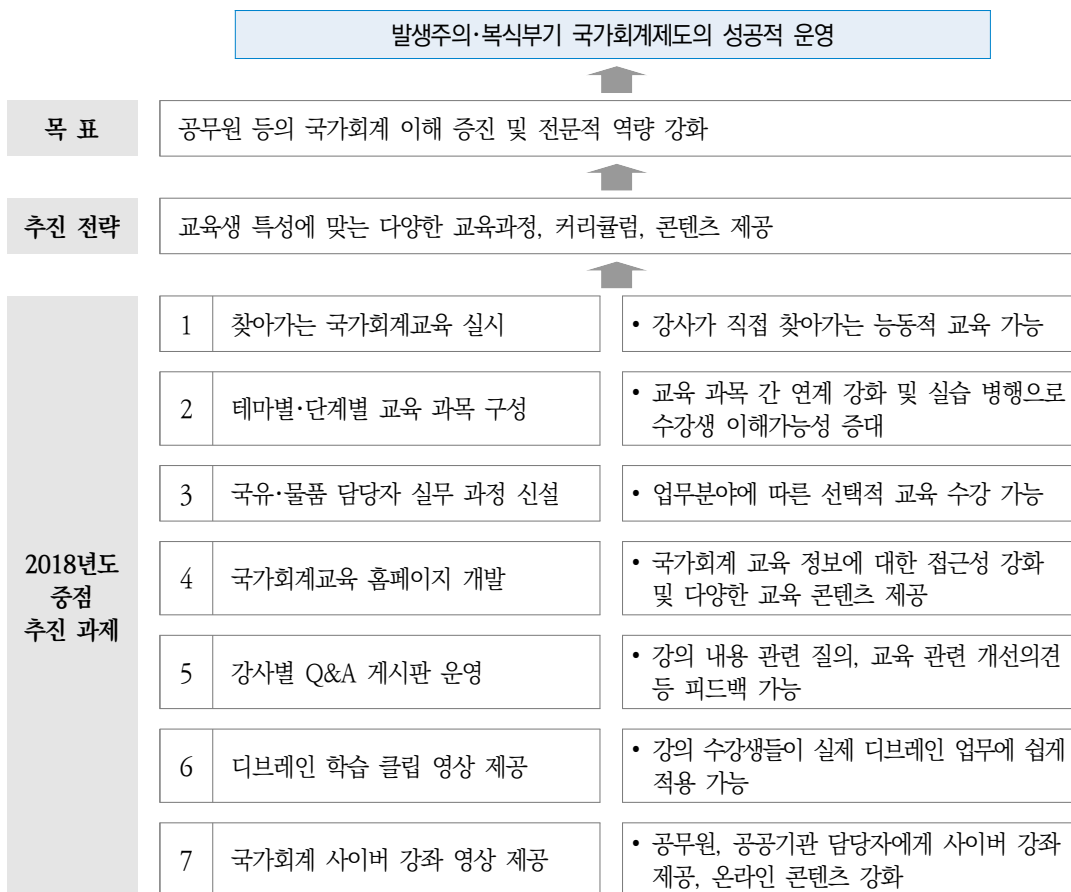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2018년 국가회계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는 7대 과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가. 교육 목표

국가회계교육은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서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전문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7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도 국가회계교육 목표 및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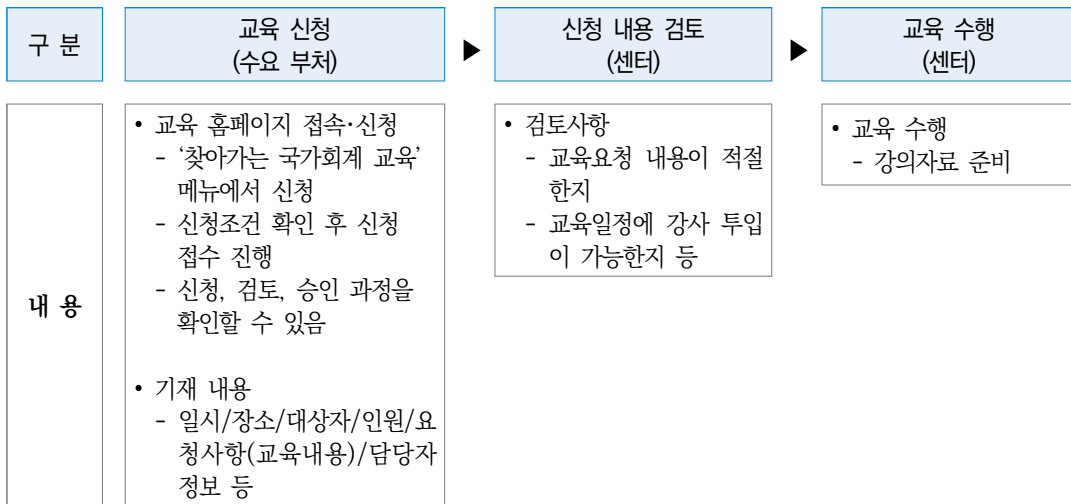
나. 중점 추진 과제

1)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 실시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은 강사가 수강생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교육 방식이다. 운영방법은 국가회계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처에서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교육내용을 정하여 신청하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진이 교육 실시 여부를 검토한 후 요청한 기관에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신청 가능한 교육내용은 국가회계 이론과 실무 등 부처가 요청한 주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은 6월부터 12월 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개최되는 일자에는 강의신청이 제한된다.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운영 절차〉



2) 테마별·단계별 교육과목 구성

교육과목은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기간 동안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과목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알기쉬운 국가회계'를 참고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 개념,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주요계정과목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하고 이론교육 후 실습을 통해 실전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과목〉

교육 과정		과 목	비 고
국가회계이론	1일차	■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실습
		■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	
		■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국가회계실무	2일차	■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실습
		■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 업무유형별 유의사항	
국가회계실무	3일차	■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실습
		■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3) 국유·물품 담당자 과정 신설

이전의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무 과정에는 수입·지출 업무에 대한 교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유·물품담당자의 경우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유·물품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강의를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교육생이 담당업무 분야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구분 교육이 실시되는 첫 해인만큼 수입·지출담당자 실무교육은 8회, 국유·물품담당자 실무교육은 2회(서울, 대전)로 편성하였으며, 올해의 신청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교육 일정에 증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무 과정 일정〉

구 분	차수	지 역	일 정	구 분	차수	지 역	일 정
수입 지출	1차	서울	6. 22.	국유 물품	5차	대전	7. 20.
	2차	대구	6. 29.		6차	서울	8. 24.
	3차	광주	7. 6.				
	4차	부산	7. 12.				
	7차	제주	8. 31.				
	8차	강릉	9. 7.				
	9차	서울	9. 14.				
	10차	세종	10. 19.				

4)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 운영

올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시작 일정에 맞춰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신청과 결과조회, 교육자료, Q&A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수강생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기획재정부 나라배움터에 등록된 「국가회계법령」 등에 관한 48개의 교육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나라배움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공공기관 종사자도 필요시 언제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회계 교육교재 및 디브레인 학습 클립 영상, 집합교육 현장강의 영상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가회계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통해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본 홈페이지는 5월 초에 오픈 예정이나, 교육자료 게시판은 추가적인 개발 일정으로 7월 이후에 이용 가능하다.

5) 강사별 Q&A 게시판 운영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 강사와 수강생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강사별 Q&A 게시판'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강사에게 질의하면 강사가 질의를 확인하여 직접 답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사별 Q&A 게시판은 그동안 수강생이 현장강의에서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할 수 없었거나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게시판은 질의수에 따라 강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회계전문교육 기간 중에만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기간 이후에는 일반 Q&A게시판을 통해 질의를 할 수 있다.

6) 디브레인 학습 클립 영상 제공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실제 디브레인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디브레인 화면을 클립 영상으로 제작해 게재할 예정이다.

디브레인 학습 클립 영상은 담당자가 수입·지출 등 업무유형별로 디브레인 처리 방법을 실제 화면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브레인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사이버 강좌 영상 제공

기획재정부 나라배움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국가회계법령과 예규 중심의 48개 사이버 강좌를 앞으로는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도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쉽게 접속하여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계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최근 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이버 강좌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다. 촬영된 영상은 기획재정부 나라배움터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 각각 제공하여 업데이트된다.

또한 나라배움터 사이버 강좌 영상과 함께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현장강의 영상을 촬영하여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간적 제약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수강하지 못하는 공무원 등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상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 다만 사이버 강좌를 통한 학습은 업무 처리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되며 학습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본 사이버 강좌 영상은 콘텐츠 수집 및 촬영, 홈페이지 개발 일정 등에 따라 7월 이후에 제공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나라배움터 제공 사이버 강좌 리스트〉

차시	강의명	차시	강의명
1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1)	25	비용 회계처리지침 설명(문단 1-30)
2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2)	26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설명(문단 1-25)
3	발생·복식 회계의 기초개념(1)	27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설명(문단 1-25)
4	발생·복식 회계의 기초개념(1)	28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설명(문단 22-37)
5	회계순환과정의 실습과 재무제표 작성(1)	29	국가회계 원가정보의 특성
6	회계순환과정의 실습과 재무제표 작성(1)	30	프로그램 원가계산(1)
7	국가회계법령 체계	31	프로그램 원가계산(2)
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 예규	32	프로그램 원가계산(3) 및 오류유형 분석
9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 지침(1)	33	연금사업의 이해 및 연금 관련 지출 회계처리
10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 지침(2)	34	연금충당부채 산정 및 회계처리
11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1)	35	보험사업의 이해 및 회계처리
1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2)	36	보증사업의 이해 및 회계처리
13	국유재산과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37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설정 및 상각(1)
14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38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설정 및 상각(2)
15	사용수익권과 관리전환, 감가상각	39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
16	재평가, 감액손실, 제거, 공시사항	40	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17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설명(문단 1-6)	41	리스회계처리지침
18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설명(문단 7-19)	42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19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문단 3-16)	43	세입세출의 거래의 이해
20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문단 17-30)	44	세입세출의 거래의 회계처리
21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문단 31-42)	45	국고금의 이해 및 일반적인 회계처리
22	특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문단 43-48)	46	국고금의 특수한 회계처리
23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47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결산보고서
24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4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04 재정통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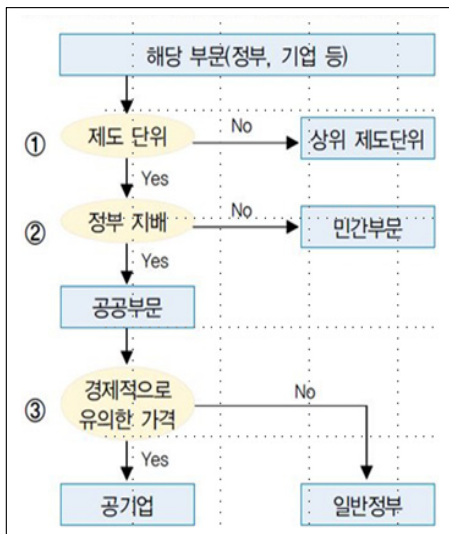
1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가.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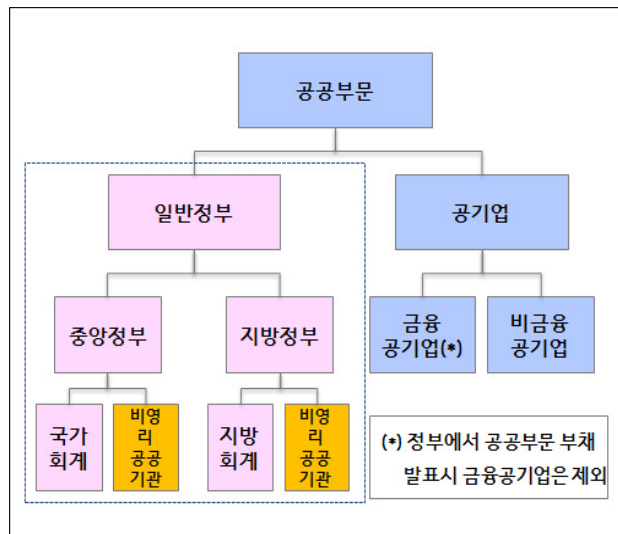
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GFSM 2001의 주요 특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재정통계 작성범위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 및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FS체계는 저장(stock)과 유량(flow)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나. 포괄범위

〈공공부문 decision tree〉



〈공공부문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SNA 2008, ESA 2010 등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decision tree’와 같이 제도단위와 시장성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포괄범위를 산정한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 시장성기준, 특수기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① 제도단위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② 시장성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인 경우 일반정부, 50%를 초과할 경우 공기업(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③ 특수기준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판매비율 80% 이상)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금(54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214개)을 포함하며, 재정통계 연차보고서의 작성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직영기업 266개, 공사 및 공단 93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재정통계 연차 보고서를 일반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 주요 연차보고서

GFSM 2001에서는 총 13종의 연차보고서(Statement 2개, Table 9개, Annex 2개)가 작성되는데, 이 중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일반정부(중앙정부 + 지방정부) 기준의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4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증감률
□ 총수입(A)	504.9	534.6	568.0	33.5	6.3
(GDP 대비, %)	(34.0)	(34.2)	(34.7)	(0.5)	
○ 조세	270.5	291.2	320.7	29.5	10.1
○ 사회보험료	102.6	109.4	117.7	8.3	7.6
○ 출연	0.0	0.0	0.0	△0.0	△70.7
○ 기타수익	131.8	134.0	129.6	△4.4	△3.2
□ 총지출 ¹⁾ [(1)+(2)]	484.1	515.1	525.2	10.1	2.0
(GDP 대비, %)	(32.6)	(32.9)	(32.1)	(△0.9)	
(1) 비용(B) ¹⁾	442.8	470.2	482.9	12.7	2.7
(GDP 대비, %)	(29.8)	(30.1)	(29.5)	(△0.6)	
○ 피용자 보수	90.4	94.9	99.6	4.7	5.0
○ 재화와용역의사용	92.2	99.1	106.4	7.4	7.4
○ 고정자산소비	24.7	26.6	27.5	0.9	3.6
○ 이자	22.6	22.2	21.0	△1.2	△5.4
○ 보조	70.0	76.6	74.3	△2.3	△2.9
○ 출연	0.6	0.7	0.1	△0.5	△78.8
○ 사회급여	92.6	100.1	108.9	8.8	8.8
○ 기타비용	49.7	50.1	44.9	△5.2	△10.4
(2) 비금융자산순취득(C) ¹⁾	41.3	44.9	42.3	△2.6	△5.8
(GDP 대비, %)	(2.8)	(2.9)	(2.6)	(△0.3)	
□ 순운영수지(A-B)	62.1	64.4	85.1	20.8	32.2
(GDP 대비, %)	(4.2)	(4.1)	(5.2)	(1.1)	
□ 순융자·차입(A-B-C)	20.8	19.5	42.9	23.4	119.8
(GDP 대비, %)	(1.4)	(1.2)	(2.6)	(1.4)	

주: 1)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임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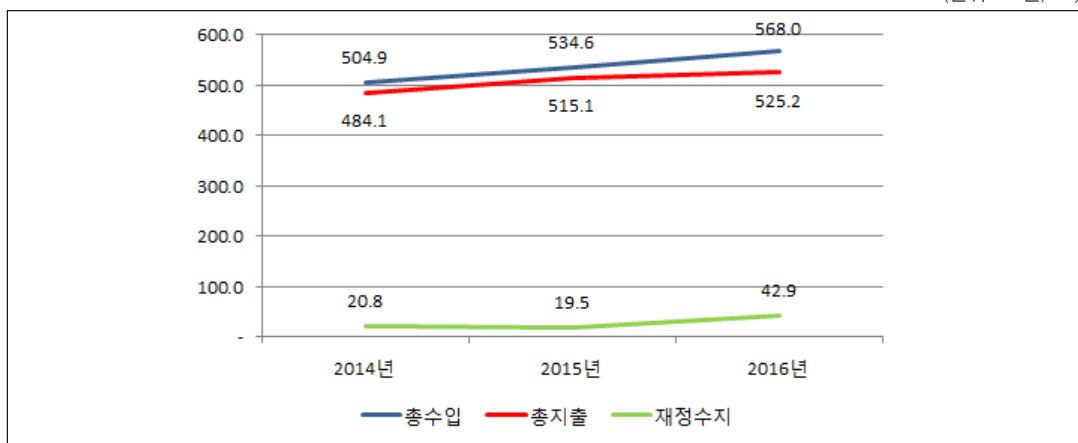
정부운영표는 당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총수입', '비용', '비금융자산순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정부운영표상 '총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수익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이익, 환산이익,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반면에,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손실, 환산손실, 처분손실, 손상차손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한편, '비금융자산순취득'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순투자(취득-처분)에서 고정자산소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재된다.

2016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결과, 총수입은 568.0조원(GDP 대비 34.7%)이며,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453.4조원(GDP 대비 27.7%), 지방정부 250.7조원(GDP 대비 15.3%), 내부거래 △136.1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525.2조원(비용 482.9조원 + 비금융자산순취득 42.3조원)으로, 각 정부별 지출은 중앙정부 420.7조원(GDP 대비 25.7%), 지방정부 240.6조원(GDP 대비 14.7%), 내부거래 △136.1조원으로 구성된다.

2016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순융자·차입)는 42.9조원(GDP 대비 2.6%) 흑자로, 각 정부별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32.7조원(GDP 대비 2.0%), 지방정부 10.2조원(GDP 대비 0.6%)으로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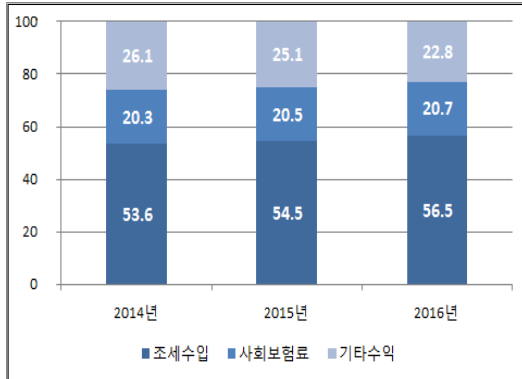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① 총수입

〈총수입 경제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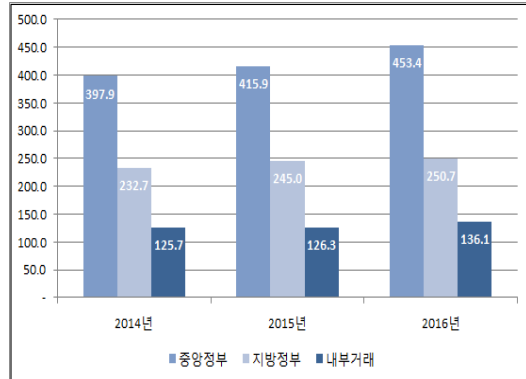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저자 작성

〈총수입 부문별 분류〉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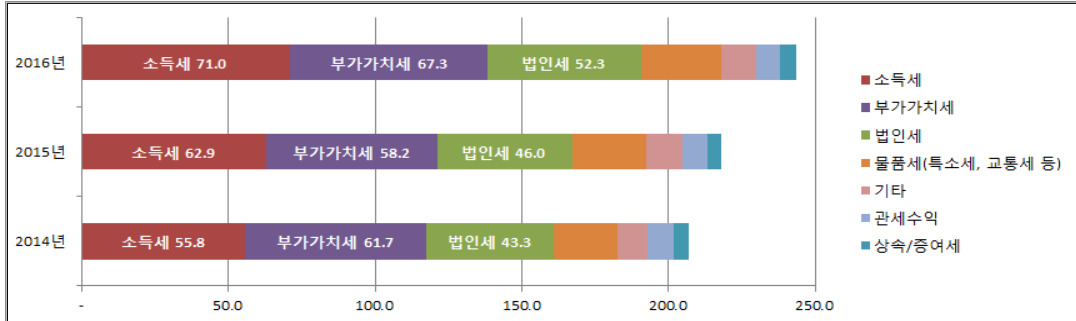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일반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33.5조원(6.3%) 증가한 568.0조원이며, 조세 및 사회보험료 증가가 주된 증가 요인이다. 2016년 조세수입은 320.7조원으로 전년 대비 29.5조원(10.1%)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수입은 117.7조원으로 전년 대비 8.3조원(7.6%)이 증가하였다.

(조세수입) 2016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각각 243.4조원 및 77.3조원으로 집계되었고, 부문별 증감을 보면 중앙은 25.2조원(11.6%), 지방에서는 4.3조원(5.9%)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주요 조세항목별 추세를 보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각 9.1조원, 8.1조원, 6.3조원이 증가였고, 그밖에 물품세 및 상속/증여세가 각각 2.1조원, 0.7조원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년 대비 각각 1.0조원, 0.7조원 증가함에 따라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조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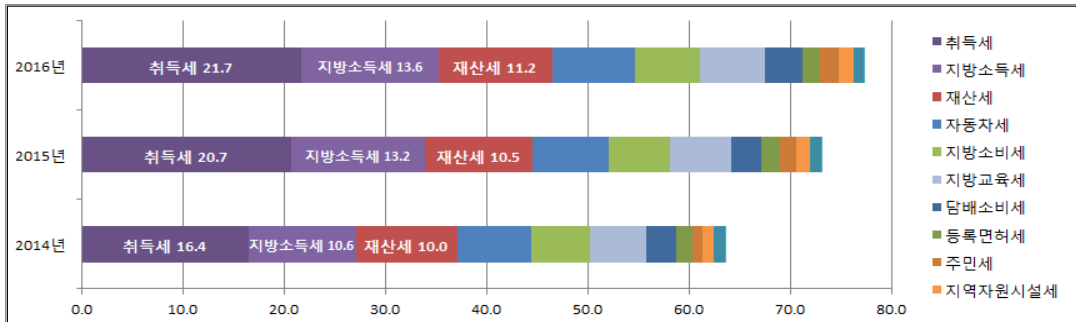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출처: 저자 작성

〈지방정부 조세수입〉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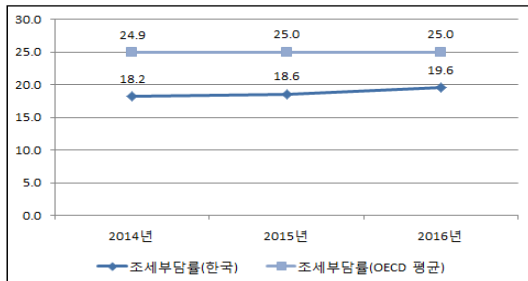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사회보험료수익) 2016년 사회보험료수익은 국가회계·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등) 67.0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0.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부문별 증감을 보면 국민연금 2.6조원, 공무원연금 0.9조원, 고용보험 0.5조원, 산재보험 0.3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조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8.3조원(7.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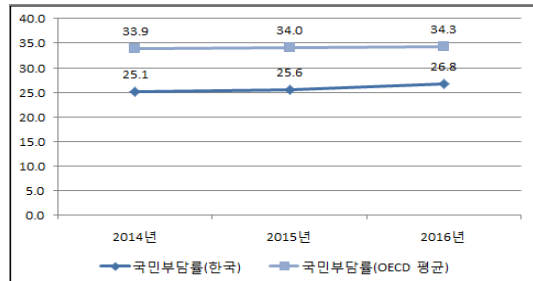
(국제비교) 2016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6%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¹⁾ 25.0%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26.8%로 전년(25.6%) 대비 1.2%p 증가했지만, OECD 평균(34.3%)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 GDP 대비 %)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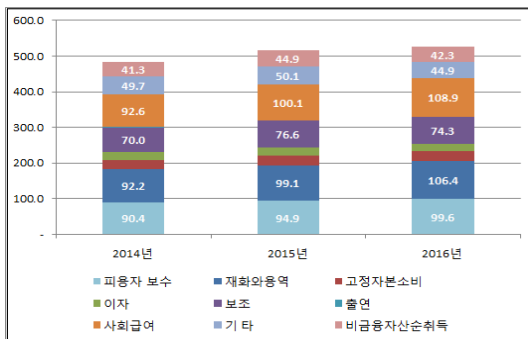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② 총지출

〈총지출 경제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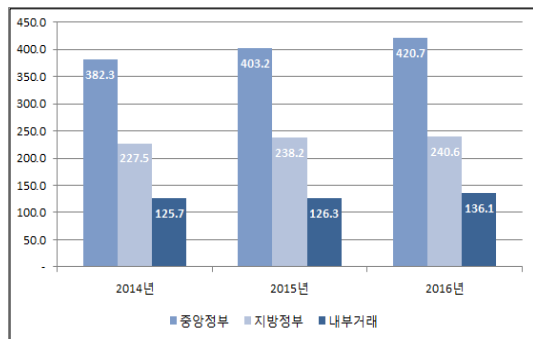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출처: 저자 작성

〈총지출 부문별 분류〉

(단위 : 조원)



출처: 저자 작성

1) 2016년 조세부담률 OECD 평균은 자료가 없어서 2015년 비율로 작성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사회급여 108.9조원(비중: 20.7%), 재화와용역의사용 106.4조원(비중: 20.3%), 피용자보수 99.6조원(비중: 19.0%), 보조 74.3조원(비중: 14.2%), 비금융자산순취득 42.3조원(비중: 8.1%)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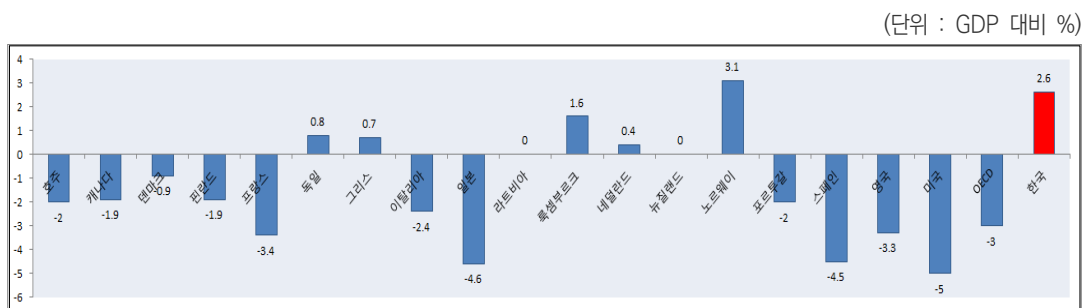
총지출은 전년 대비 총 10.1조원(2.0%) 증가했으며, 주요 계정별 증감을 보면, 재화와용역의사용 7.4조원(7.4%), 피용자보수 4.7조원(5.0%), 사회급여 8.8조원(8.8%)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③ 재정수지

정부운영에 따른 결과인 재정수지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차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운영수지’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6년 우리나라의 순운영수지는 85.1조원 흑자(GDP 대비 5.2%)를 기록하여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융자·차입’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순취득’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6년 우리나라의 ‘순융자·차입’은 42.9조원 흑자(GDP 대비 2.6%)를 기록하였다. ‘순융자·차입’은 국가 간 재정수지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평균 △3.0% 대비 양호한 편이다.

〈OECD 국가별 재정수지〉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1 database(17.06)

2)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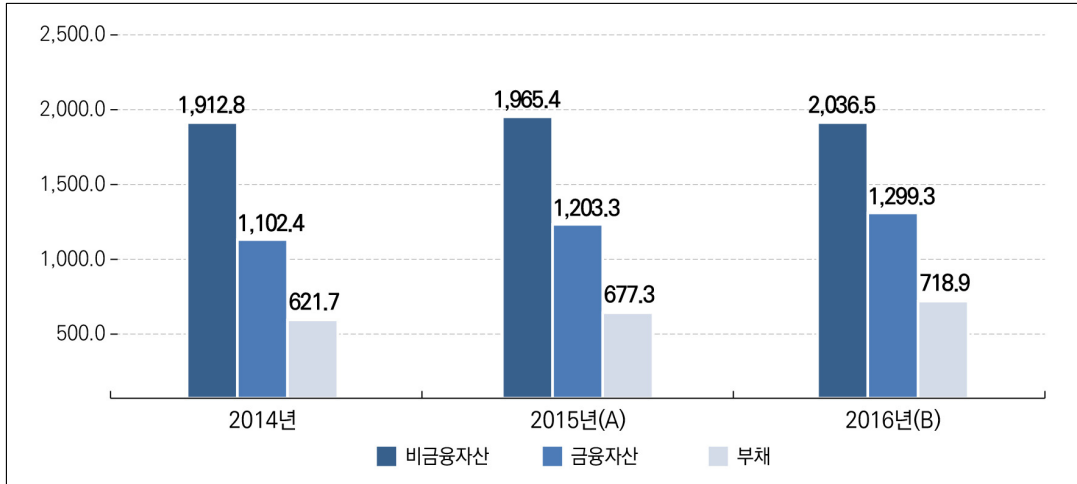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p)

	2014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증감률
□ 자산	3,015.2	3,168.7	3,335.8	167.1	5.3
(GDP 대비, %)	(202.9)	(202.6)	(203.7)	(1.1)	
○ 비금융자산	1,912.8	1,965.4	2,036.5	71.2	3.6
(GDP 대비, %)	(128.7)	(125.7)	(124.4)	(△1.3)	
고정자산	1,070.1	1,093.1	1,129.0	35.9	3.3
재고자산	14.6	15.0	15.3	0.3	2.1
비생산자산	828.1	857.2	892.2	34.9	4.1
○ 금융자산	1,102.4	1,203.3	1,299.3	96.0	8.0
(GDP 대비, %)	(74.2)	(76.9)	(79.4)	(2.4)	
현금및예금	198.4	216.2	232.3	16.1	7.5
채무증권	143.2	139.7	148.2	8.5	6.1
융자	161.6	162.9	167.5	4.5	2.8
주식및기타지분	435.9	506.1	566.5	60.3	11.9
보험책임준비금	-	-	-	-	-
파생금융상품	2.9	1.7	2.2	0.5	26.9
기타미수계정	160.5	176.6	182.6	6.0	3.4
□ 부채	621.7	677.3	718.9	41.6	6.1
(GDP 대비, %)	(41.8)	(43.3)	(43.9)	(0.6)	
현금및예금	-	-	-	-	-
채무증권	484.8	524.8	554.7	29.9	5.7
융자	69.7	93.5	100.2	6.8	7.2
주식및기타지분	0.4	0.4	0.4	0.0	5.4
보험책임준비금	-	0.0	0.0	0.0	16.6
파생금융상품	0.7	0.8	1.0	0.3	32.8
기타미지급계정	66.1	57.9	62.6	4.7	8.1

출처: 저자 작성

〈일반정부 3개년 자산, 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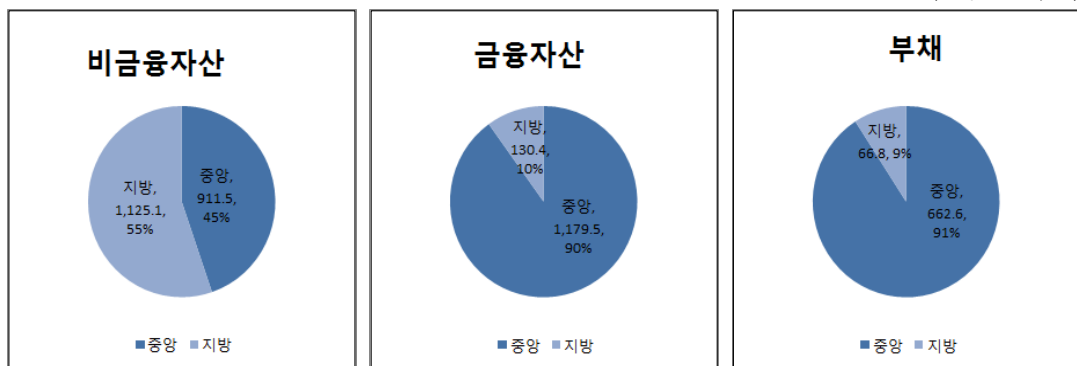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일반정부의 자산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는데, 2016년 부채는 전기 대비 41.6조원(6.1%)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경우 각각 96.0조원(8.0%) 및 71.2조원(3.6%)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 대비 금융자산의 증가가 큰 이유는 대부분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16년 38.0조원)에 기인한다.

〈부문별 자산/부채〉

(단위 : 조원, %)



출처: 저자 작성

① 비금융자산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은 총 2,036.5조원(GDP 대비 124.4%)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911.5조원(GDP 대비 55.7%), 지방정부 1,125.1조원(GDP 대비 68.7%)으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총 71.2조원 증가했는데, 거래로 인한 증가가 42.3조원, 거래외경제유량(평가, 감액 등)으로 인한 증가가 28.9조원이다.

②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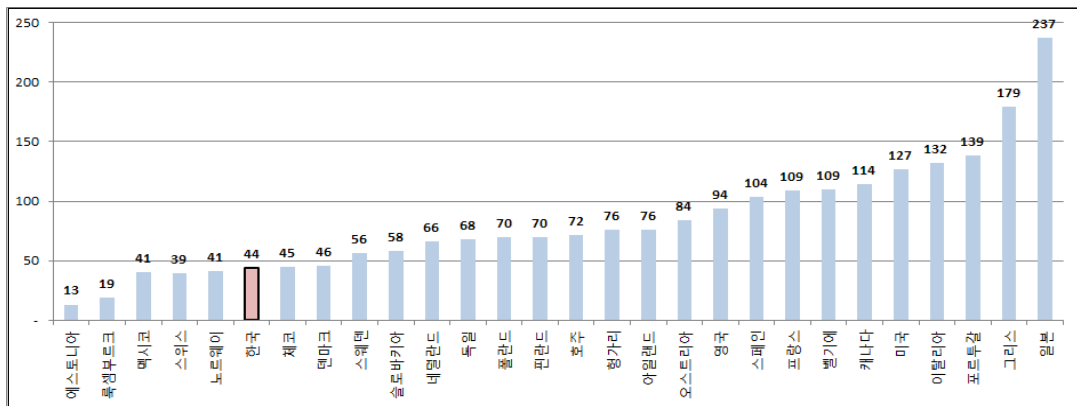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총 1,299.3조원(GDP 대비 79.4%)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1,179.5조원(GDP 대비 72.0%), 지방정부 130.4조원(GDP 대비 8.0%)으로 구분된다. 금융자산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경우 주식및기타지분(43.6%), 현금및예금(17.9%), 기타미수계정(14.1%), 용자(12.9%), 채무증권(11.4%) 등으로 구성된다. 주식및기타지분 및 채무증권의 경우 전년 대비 68.9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③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총 718.9조원(GDP 대비 43.9%)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662.6조원(GDP 대비 40.5%), 지방정부 66.8조원(GDP 대비 4.1%)으로 구분되며, 상품유형별로는 채무증권(77.2%), 용자(13.9%), 기타미지급계정(8.7%)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 GDP 대비 총금융부채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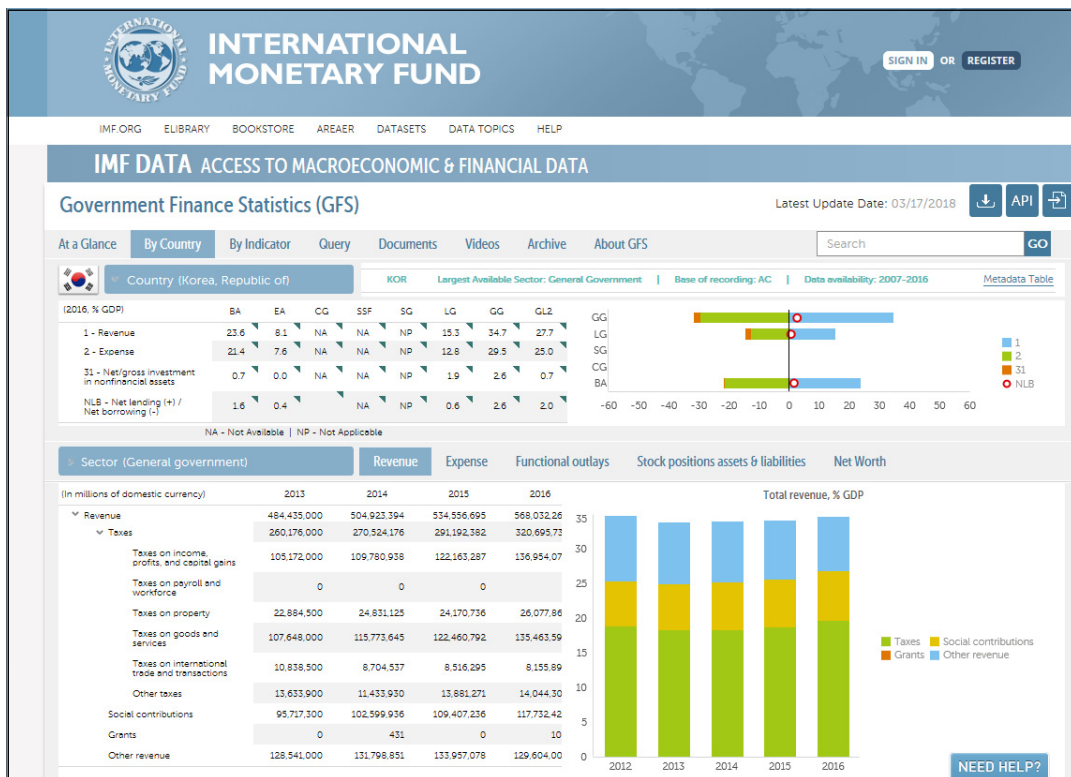
출처: OECD, Stst

금융부채 중 채무증권 및 용자는 전년 대비 29.9조원(5.7%), 6.8조원(7.2%) 증가했는데, 채무증권의 경우 일반회계 및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증가(38.1조원)가 주된 요인이다. 용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 6.8조원 증가 및 BTL 관련 미지급금이 0.1조원 증가함에 따른 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현재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부채 규모는 718.9조원으로(GDP 대비 43.9%),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시

정부는 매년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재정통계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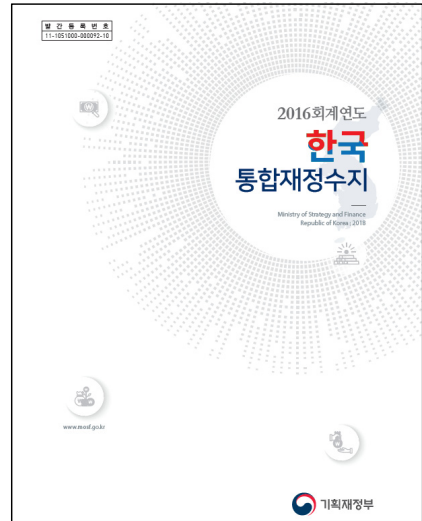


출처: <http://data.imf.org/?sk=89418059-d5c0-4330-8c41-dbc2d8f90f46&slid=1435762628665>

2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월별·연도별 재정통계·추이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는 42.9조원 흑자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회계연도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

2016년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GDP 대비 1.0%)으로 통합재정수입은 371.3조원(GDP 대비 22.7%), 통합재정지출은 354.4조원(GDP 대비 21.6%)을 기록하였다.

(단위 :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일반회계	244,964	216,930	28,035
기타특별회계	13,600	39,415	△25,815
세입세출외	126	269	△143
기금	110,588	94,933	15,655
기업특별회계	1,986	2,807	△821
합계	371,264	354,354	16,910
(GDP 대비, %)	(22.7)	(21.6)	(1.0)

주 : 2016년 GDP 규모: 1,637.4조원(한국은행, 잠정)

나.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

2016년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2.9조원(GDP 대비 2.6%)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일반정부 수입은 총 568.0조원(GDP 대비 34.7%)으로 중앙정부가 453.4조원, 지방정부가 250.7조원이며, 일반정부 지출(비용+비금융자산순취득)은 총 525.2조원(GDP 대비 32.1%)으로 중앙정부에서 420.7조원, 지방정부에서 240.6조원을 지출하였다.

(단위 : 조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 총수입(A)	453.4	205.4	59.6	△14.3	250.7	△136.1	568.0
(GDP 대비, %)	(27.7)	(12.5)	(3.6)	(△0.9)	(15.3)	(△8.3)	(34.7)
□ 총지출(B+C)	420.7	193.8	61.1	△14.3	240.6	△136.1	525.2
(GDP 대비, %)	(25.7)	(11.8)	(3.7)	(△0.9)	(14.7)	(△8.3)	(32.1)
(1) 비용(B)	409.2	165.6	58.5	△14.3	209.8	△136.1	482.9
(GDP 대비, %)	(25.0)	(10.1)	(3.6)	(△0.9)	(12.8)	(△8.3)	(29.5)
(2) 비금융자산순취득(C)	11.5	28.2	2.6	-	30.8	-	42.3
(GDP 대비, %)	(0.7)	(1.7)	(0.2)	(-)	(1.9)	(-)	(2.6)
□ 재정수지(A-B-C)	32.7	11.6	△1.4	-	10.2	-	42.9
(GDP 대비, %)	(2.0)	(0.7)	(△0.1)	(-)	(0.6)	(-)	(2.6)

주 : 2016년 GDP 규모: 1,637.4조원(한국은행, 잠정)

다. 2016년도 일반정부 자산 및 부채

GFSM 2001 기준에 따른 2016년도 일반정부 자산(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3,335.8조원(GDP 대비 203.7%)이며, 일반정부 부채는 718.9조원(GDP 대비 43.9%)이다.

(단위 : 조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 자산	2,090.9	1,159.9	97.1	△1.6	1,255.4	△10.5	3,335.8
(GDP 대비, %)	(127.7)	(70.8)	(5.9)	(△0.1)	(76.7)	(△0.6)	(203.7)
□ 부채	662.6	48.5	19.9	△1.6	66.8	△10.5	718.9
(GDP 대비, %)	(40.5)	(3.0)	(1.2)	(△0.1)	(4.1)	(△0.6)	(43.9)

3 2017회계연도 상장공기업 결산

2017회계연도 상장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상장공기업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며, 확정된 감사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로 제출된다. 상장공기업의 대부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 당기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매출원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영향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기관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전력공사²⁾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177,837,042	181,788,915	3,951,873	2.2
부채	104,786,497	108,824,273	4,037,776	3.9
자본	73,050,545	72,964,641	△85,903	△0.1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60,190,385	59,814,862	△375,523	△0.6
영업이익	12,001,599	4,953,152	△7,048,447	△58.7
당기순이익	7,148,327	1,441,393	△5,706,933	△79.8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투자 및 배당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유동자산이 0.5조원 감소하였지만, 한수원 신고리 원전 투자 등 전력설비투자 증가로 비유동자산이 4.5조원 증가함에 따라 자산은 전년 대비 4.0조원 증가하였다. 부채는 방폐물 관리비용 및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상승으로 인해 비유동 충당부채가 2.8조원 증가 및 전력설비 투자로 인해 0.9조원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0조원 증가하였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해외사업수익 감소로 전년 대비 0.3조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매출원가 등 영업비용이 6.6조원이 증가하여 5.0조원의 영업이익(전기 대비 7.0조원

2)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로서, 9개 자회사의 손익은 한국전력의 손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개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보고는 생략함

감소)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세전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비용 감소(1.2조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7조원 감소한 1.4조원을 기록하였다.

나. 한국가스공사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40,042,003	37,139,439	△2,902,564	△7.2
부채	30,568,978	28,999,025	△1,569,953	△5.1
자본	9,473,025	8,140,414	△1,332,611	△14.1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21,108,116	22,172,305	1,064,189	5.0
영업이익	998,214	1,033,937	35,723	3.6
당기순이익(손실)	△612,478	△1,191,735	△579,257	△94.6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원료비 미수금 회수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자산이 전년 대비 1.3조원 감소하였고, 재고단가 상승 및 전기 대비 연말 가스 판매량 증가로 인해 재고자산이 전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설비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및 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유무형자산은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하였다. 부채의 경우 장단기 차입금 규모의 감소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하였다. 유가상승으로 인해 전기 대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모두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한 1.0조원을 기록하였고, 자원개발 자산의 손상차손이 1.7조원 발생(전기 대비 0.7조원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하였다.

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5,133,805	5,721,591	587,786	11.4
부채	3,328,802	3,891,858	563,057	16.9
자본	1,805,003	1,829,733	24,729	1.4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1,719,867	1,834,422	114,555	6.7
영업이익	161,656	119,796	△41,860	△25.9
당기순이익	126,707	69,878	△56,829	△44.9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탄·광주전남 건설공사 투자비 등이 증가하여 자산이 전년 대비 5,878억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사채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5,631억원 증가하였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전기 판매단가 상승 및 전기판매량 증가로 1,146억원 증가하였고, 국제유가상승 등에 따라 영업비용이 1,564억원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418억원 감소한 1,198억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외이익 또한 전년 대비 소송충당부채환입 및 투자부동산 처분이익 감소로 150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68억원 감소한 699억원을 기록하였다.

라. 그랜드코리아레저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자산	730,178	731,904	1,727	0.2
부채	211,451	199,852	△11,599	△5.5
자본	518,726	532,052	13,326	2.6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7(B)	증감(B-A)	증감률(B-A)/A
매출액	548,230	501,296	△46,934	△8.6
영업이익	151,183	108,169	△43,014	△28.5
당기순이익	114,343	80,539	△33,804	△29.6

그랜드코리아레저 자산은 금융자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매출 감소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개별소비세,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16억원 감소하였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중국의 한국관광금지초지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쟁사인 파라다이스시티 오픈으로 인해 469억원 감소하였으나, 영업비용 또한 입장객 감소에 따른 판매촉진비의 감소효과로 인해 39

억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의 경우 430억원 감소한 1,082억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비용 감소효과 91억원으로 인해 전년 대비 338억원 감소한 805억원을 달성하였다.

4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공개하고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2월 8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고시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부재하여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익법인 간의 재무정보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공익법인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며, 보다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용에 대한 비교가 수월해 질 것이고,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로 인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5

특집

1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배원기 교수
RSM 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 세무 그룹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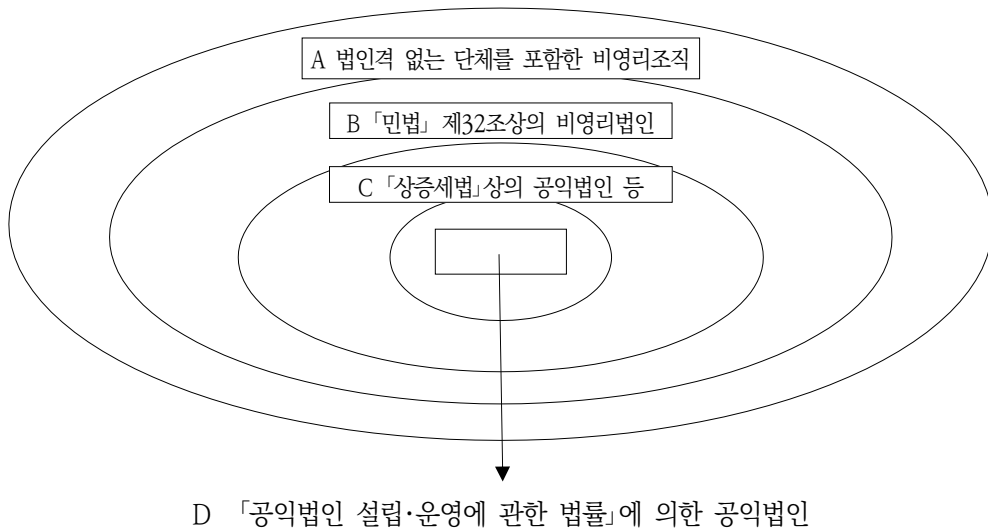
가. 들어가는 글

작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형태로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¹⁾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1)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2개의 공익법인 개념이 있다. 즉,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있다. 전자가 후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이 글의 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상증세법」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회계기준이라고 해야 한다.

나. 공익법인이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개념 내지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의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이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비영리 조직을 의미한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될 것인지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주자(공동사업자 내지 조합)로 취급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A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관할의 법률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B의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C의 「상증세법」 상의 ‘공익법인 등’이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증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면제되며, 그 대신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겐 협의의 D의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한 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상증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참고로, 「공익법인법」은 1975. 12. 9. 정부 제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1975. 12. 18.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나, 1975년 이전에 문화재단 등의 형태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탈세나 비영리법인의 비정상적 운영이 많아, 이를 규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법」이 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경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고, 1975년에 신설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²⁾’는 규정을 두어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각각의 주무부처 장관이 정한 재무규칙 등에 따른 회계처리가 요구되는데, 이들은 정부보조금 등을 받거나 행정규제를 받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회계 내지 예산회계 성격의 회계자료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목적의 회계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KAI)이 2003년 3월에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국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미국의 회계기준을 그대로 번역한 정도에 불과하던 평이 많았다. 또한, 의무 규정도 아닌데다가 내용이 어려워 실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그 뒤, 2008년 「상증세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한편, 국세청 사이트에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로 하여금 비영리조직 회계

2)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이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을 한 후, 별도로 상증세법상의 공시를 위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기준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5년 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KASB가 비영리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세제실)가 2016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약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8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고시되었다.

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KASB의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 초안을 기초로 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학계 등 민간전문가 TF가 초안을 마련했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됐다.

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방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고시되기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이 지난해 12월 8일에야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요청한 해설서나 가이드라인 또는 FAQ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아쉬움도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의 대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³⁾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박수주를 하여, 조선소를 만드는 동시에 선박도 같이 만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은 미약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겠지만, 조만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방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해설서, 가이드라인 또는 FAQ를 만들고,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재산세제과)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급, 교육 및 홍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예, 전문 네트워크 조성 및 예산 책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에서,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main/mainPageTmp.do>)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⁴⁾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실무해석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법인과 기타 비영리 회계전문가들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해설서, 가이드라인 또는 FAQ 등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점, 개선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보면, 이론보다 실제 수많은 환자를 접하여 얻는 경험을 통하여 명의(名醫)가 되는 것과 같이, 실무 사례를 가급적 많이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FAQ를 만들고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방향이다.

마.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영리 공익섹터는 민간경제(영리섹터)와 정부섹터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로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 분야의 성장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빈부격 차나 기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은 공익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GNP의 1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구축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섹터 회계분야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초석으로서, 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유관부서들이 협조하여 공익법인 관련법령들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법령으로서는, 법무부 소관인 「민법」 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부분, 「공익법인법」, 행정안전부 소관인 「기부금품법」, 기획재정부 소관인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의 세법을 들 수 있다. 회계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법률, 규정 등에 기초하여 거래관계나 사실관계를 회계정보로 만들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조항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4) 회계전문가 중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조세업무를 관장하는 세제실이 관장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나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연구하고 질의회신을 담당할 곳은, 정부회계 및 공기업 회계를 담당하는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회계도 비영리회계에 포함되며, 공익법인 회계는 영리기업회계보다는 정부회계, 공기업회계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 단계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교단체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공익법인 통계이다. 이 통계를 보면, 2016년말 33,888개의 공익법인 중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할 단체는 종교, 교육, 의료를 제외한 13,221개이며, 이는 전체 공익법인의 39%에 불과하다. 부연하면, 39%에 해당하는 단체가 적용하도록 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추어 제정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시양식’을,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공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이들 공익법인들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들 법인들에 적합한 별도의 공시양식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회계기준을 통합한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⁵⁾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

(단위 : 개)

년도	합계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2012년	29,509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013년	29,849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2014년	29,732	17,542	3,119	1,697	3,499	786	813	2,276
2015년	34,743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2016년	33,888	17,978	3,461	1,736	4,369	1,331	953	4,060

출처: 2017년 『국세통계연보』

셋째,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사이트(공익법인 결산서류/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내역 공시 및 공개 시스템(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에 공시한 결산서류 등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최고책임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고, 잘못 공시한 사례가 많아 불충분한 정보들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사이트는

5) 이는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영리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같이, XBRL을 기초로 하여 재무정보 등이 입력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사이트나 행정안전부의 1365 기부포탈(<https://www.nanumkorea.go.kr/prtl/main.do>)은 통합하여, 기부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바. 맺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법인 회계규칙, 의료법인 회계기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등은 감독관청, 세무당국, 재산 출연자 내지 기부자,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의 수혜자 등 당해 공익법인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기준이라기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회계기준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오래전부터 있어야 할 기준이 이제야 마련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 우리나라 공익섹터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6

센터 동향

1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를 3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아태재정협력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위원은 연세대 주인기 교수, 충북대 이장희 교수, 목원대 권혁대 교수, 서울과기대 전중열 교수이고 내부위원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이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각 팀장들이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 기본운영방향 및 추진 일정'을 보고하였고, '평가지표별 2018년 추진계획' 안전과 관련하여 외부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8년 센터 사업계획에 센터의 미션과 미션달성을 위한 전략 순으로 작성하고, 센터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별 예산배분현황을 제시하여 추진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관부처와의 협력 및 연계 증진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 간부급에 대한 국가회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제협력사업과 연구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관계증진 및 협력' 계량 지표와 '관련학회 발표 횟수' 계량지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2017년 평가결과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진행의 환류노력 및 사업개선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18년 상반기 중간점검 및 12월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2 2018년 2차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재정통계팀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하여 2월 19일(월) 제2차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5명과 재정통계팀 전원이 참석하였다. 재정통계팀은 크게 '통계파트',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지원 파트', '공익법인 파트', '연구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졌다.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2.1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

이번 재무통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2018년 재정통계팀의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은 신규 사업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관련 업무와 연구 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업무의 경우 '실무해설서 마련'과 '질의회신 대응 계획',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선 사항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분야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OECD 주요 국가의 재무분석서' 등과 같은 연구 주제들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센터에서는 해당 조안들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재공유할 예정이며, 2018년 연구 및 고유과제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2018년도 기본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도 기본과제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 결산보고서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3월 30일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장기재정전망 등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공적연금 정보의 수요에 기초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공동연구진과의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지표 개발 후 4/4분기 국민공감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육군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과 국방재정업무의 발전 및 투명한 국방경영을 위하여 2월 7일 계룡대 본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을 위한 현안 이슈 발굴,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고 등 미래 발전전략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육군은 국방재정 업무의 발전과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재무정보를 국방경영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공동연구, 정보 교환,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회계 관련 현안과 제 등에 대한 자문 및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 적극 협조할 의향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간 최초의 약정으로서, 육군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2017.8.)’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은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를 타 부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회계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업무협약식」(2.7.), 계룡대 본청〉

5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착수보고회를 2월 9일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차르트홀에서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로 참석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강태혁 교수(한경대),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박성환 교수(한밭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이아영 교수(강원대), 배득중 교수(연세대), 임동완 교수(단국대)가 참석하였다.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진들은 성과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산 체계 구조(hierarchy)와 정의(define)가 명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목표 관리체계(비전, 전략목표, 관리사업)와 예산 분류 체계(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를 일관성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단위사업(항·세항·세세항 포함)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계층 구조도 예산 규모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재정 운영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기획재정부 자율평가 80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회계학적 관점의 성과중심 예산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강태혁 교수(PM)는 한국의 예산분류 체계 실태와 한계를 조사하며,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이배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분류와 프로그램 예산 구조를 분석하며, 예산편성과 성과평가의 연계강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박성환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중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체계 분석을 수행하며,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성과 수명연장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남혜정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체계 분석을 수행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아영 교수는 교육 분야에서 국립대학 자산취득, 시설확충,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체계 분석을 수행하며, 자산의 유지관리 회계기록이 차기 예산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배득중 교수는 영국의 Gateway Review System과 한국의 기존 성과평가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제도로 재설계(reengineering)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임동완 교수는 선진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비교대상 국가의 관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 연구진들은 자체적으로 6차례의 월례회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의 중간보고회(6.8.)와 최종보고회(9.14~9.15)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출판할 계획이다.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착수보고회(2.9.),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6 2017회계연도 회계결산교육지원단 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월 5일에 2017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국가결산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은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 재무 제표 작성 지원이 필요한 부처에 배치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과 동일한 16명의 공인회계사가 선발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4개월에 걸쳐 중앙관서 결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올해는 대부분 결산지원 업무 수행기간을 2개월까지로 단축하여 진행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 교육은 1월 4일을 시작으로 이론교육(1일차), 실무교육(2일차), 실습교육(3일차)의 순서로 실시되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 중 1일차에 실시된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이론교육과, 2일차에 실시된 실무교육을 전담하였다. 실무교육은 ‘내부거래 제거’,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I)’,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II)’,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해설’

순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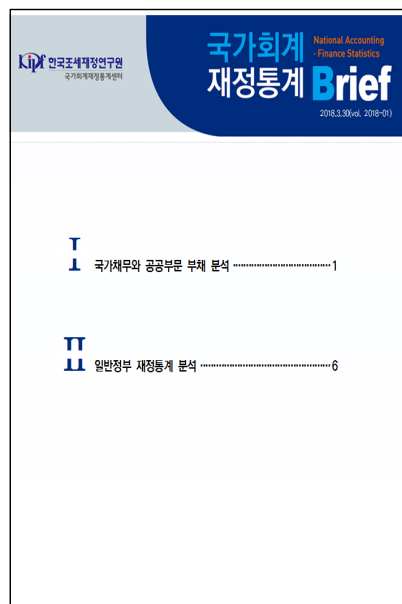
‘내부거래 제거’에서는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되어야 할 내부거래 유형 및 내부거래 제거방법을 교육하였고,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I)’에서는 결산 관련 디브레인 주요 메뉴, 재무결산 기중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II)’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개정사항과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교육하였고, 마지막으로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해설’은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과 동일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회계결산지원단은 교육 이후 1월 12일에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3월 9일까지 총 2개월간 2017 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지원 업무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이 중 일부 인원은 5월(또는 6월)까지 부처 감사원 대응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7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PSDS) 및 일반정부 재정수지(GFS)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를 3월에 발간하였다. PSDS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16년 말 공공부문부채 실적치(D3)’를 기반으로, GFS는 ‘2016 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보고서 및 보도 자료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Brief는 핵심요점만 추려 작성되었으며, 보도 자료의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도 분석하여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당 Brief를 센터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재정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PSDS와 GFS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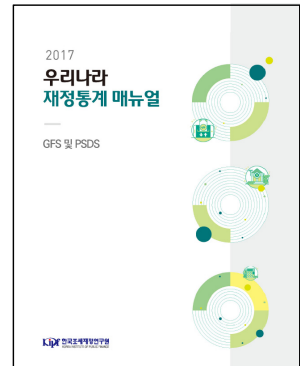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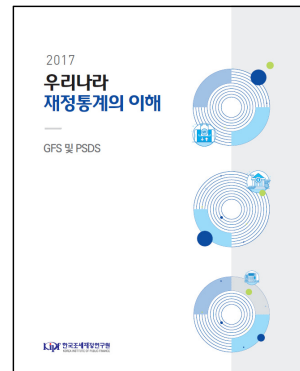
8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재정통계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와 『‘우리나라 재정통계 매뉴얼’』 두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에서는 통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GFS 및 PSDS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재정통계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도입과정, GFS 및 PSDS의 체계와 구성항목, 2016년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 계정과목 해설, Q&A 등을 수록하였고, 각종 재정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담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통계 매뉴얼』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GFS 및 PSDS 기준의 재정통계 산출 과정을 업무프로세스별로 수록하였다. 각 업무의 수행 시기, 수행방법 및 유의점, 주요 산출물 등을 다루고 있어 통계 산출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부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2부는 센터 내에서 공유하여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9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과제를 착수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12월 8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고시하였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정·고시 되었으나 회계처리 사례 등 실무해설이 없어 공익법인 회계담당자의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배경 및 경과,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설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10 목요일 세미나 「북한경제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 회계연구」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2월 목요일세미나에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를 초청하여 북한 회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이배 교수는 「경제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회계 및 북한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발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경제 학술지는 국제회계기준의 동향 등 비교적 최근 해외 동향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 내용 대부분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또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정부회계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로 구분되며, 중앙회계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운영을 계산, 분석하는 회계로서 지방, 부문 및 금융회계를 총괄하는 종합회계 성격으로 국가예산수지와 외화수지를 포함한다.

셋째, 지방회계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유동을 체계적으로 기록계산하고 주기적으로 결산하는 회계로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아래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예산 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넷째, 부문회계는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유동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결산, 분석하는 회계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원들의 전문지식 계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외부초청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11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다가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릉, 제주, 세종)에서 총 12회차에 걸쳐 실시된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각 교육 회차 중 2일간 진행되며 1일차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초 원리와 이해, 우리나라 발생주의 도입 경과 및 기업회계와의 차이, 국가회계기준 체계 및 국가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론과정 2일차에는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난해할 수 있는 국가회계 처리과정을 누구나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국가회계 업무 처리에 관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국가회계의 업무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실습, 주요계정과목에 관한 이해와 실습, 국가재무제표에 관한 이해 등 국가회계실무 과정을 통해 회계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회계실무 과정을 업무 담당자별(수입·지출, 국유·물품)로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교육생이 담당업무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중앙부처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2회(회당 2일간) 실시된다. 본 과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결산 조정분개, 내부거래실무,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수강 신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할 수 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지사항」 참조)

〈교육 커리큘럼〉

※ 본 커리큘럼은 교재개발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과정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내용		
국가 회계 이론 과정	1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1.5	1. 일반회계의 원리 2. 재무제표의 구성 3. 회계의 순환과정		
		⇨ [실습] 재무제표 만들기	1.0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이해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	2.5	1.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경과 및 효과 2.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가 현황 및 활용사례 3. 국가회계의 주요 특징(자산, 부채, 원가) 4.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5. 재산과 자산의 차이, 채무와 부채의 차이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2.0	1. 국가재정 및 국가회계법령 2. 국가회계기준의 체계 및 주요내용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국가 결산 과정		
	2일차	⇨ [실습] 국가재무정보 기초 사례 연습	1.0	※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 사례를 통한 국가의 예산, 추정,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과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 인식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작성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 입력과 재무계정과목의 자동연계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의 종류,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유형자산 감가상각 평가, 공정가치 인식 3.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평가 4. 미수채권 회수가능성, 국채, 연금 5. 기간손익의 개념 6. 장기대출금, 건설중인 건물 7. 발생한 비용과 수익의 재분배		
		⇨ [실습] 종합사례 연습	3.0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 (현금주의) 수정전시산표와 재무제표 ※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 (발생주의) 수정후시산표 및 재무제표		
		국가 회계 실무	1일	업무유형별 유의사항	1.5	1. 지출·수입 관련 유의사항(8회)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2회) 2. 내부거래

과정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내용
과정		⇨ [실습]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연계 사례 연습	1.0	※ 주요 예산목의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연습 ※ 주요 지출 건에 대한 발생유형 선택 연습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1.5	1. 자산은 재산이고 부채는 빚이다 - 예산상 수입과 지출에서 자산과 부채 구별해 내기 2.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 - 현금화되지 않는 사례(대손충당금), 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3. 보이지 않는 빚 이해하기 - 충당부채, 우발부채 주석 4. 순자산과 세대 간 부의 이전 - 국채 발행으로 지출하는 경우와 국채 발행으로 투자하는 경우 비교 5. 재정운영표로 성과를 따져보자 - 처분손익, 평가손익, 프로그램원가와 성과지표 6. 비배분비용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프로그램원가, 관리비용, 비배분비용의 구분
		⇨ [실습] 국가회계처리 연습	1.0	※ 기본적인 분개,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금액 ※ 실제사례를 통해 자산·부채 또는 비용·수익으로 처리했을 때의 차이점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2.0	1. 국가재정상태표 2. 국가재정운영표 3. 국가순자산변동표 4. 국가주석
재무결산실무과정	1일차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2.5	1. 국가재무결산 개요 및 절차 - 예산편성 절차, 예산심의, 예산집행 - 결산의의, 결산심의절차, 결산일정 2.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 인식기준, 회계범위, 회계처리대상, 결산서류 3.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4.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2.5	1.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방법 - 재무장부 메뉴구성 및 기능 2. 수정전 시산표 마감 및 유의사항 - 재무결산 오류발생 가능성 확인 및 조치 방법 - 감사원 지적사례
		결산조정분개	1.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 결산조정분개의 의의 2. 결산조정분개의 유형과 결산조정분개 사례

과정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내용
	2일차			- 유형별 회계처리, 관련 계정과목, 오류수정 및 조치
		⇒ [실습] 결산보고서 작성	1.0	※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작성(결산조정분개) - 결산조정분개 유형별 회계처리 연습
		내부거래실무	2.5	1. 내부거래의 의의 - 제거의 필요성 및 관련 기준 2. 내부거래 제거방식 - 제거절차, 대상자료 생성, 자동대사요건, 대상 제외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 내부거래 메뉴, 오류발생시 처리, 업무담당자와의 협조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 결산작성지침 목적, 활용방법 2.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유의사항 - 결산보고서 체계, 생성, 보고서생성내역조정 - 결산보고서 점검, 발행, 주석 작성 3. 총잉여금, 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 개념, 작성원리, 예시, 검토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세부설명
		⇒ [실습] 결산대비 유의사항	2.0	※ 기준개정사항 ※ 재무결산 Q&A 실습

07

2018년 1분기 IPSASB 정례 회의 출장 후기

1 출장개요

- 목적 :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정례회의 안건 의결 및 논의를 위하여 참석,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동향 파악 및 국가회계기준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
- 출장기간: 2018.3.4. ~ 2018.3.11.
- 출장지: 미국(뉴욕)
- 출장자: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전문연구원, 김선재 특수전문직 3급
- 세부일정표

일자	주제	내용	시간
3/6	개회사	참석자 확인, 과거 회의결과 및 활동현황 발표, EPSAS 업데이트, IASB 업무계획의 요약 등	9:00 - 9:30
	지배구조	PIC(공익위원회)와 CAG(자문그룹)의 구두 보고	9:30 - 10:00
	활동결과 보고	Sebastian Heintges의 구두보고 등	10:00 - 10:30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이슈의 요약	10:30 - 10:40
	국제회계교육기준위원회 (IAESB)	IAESB 의장 Chris Austin의 발표 등	11:00 - 12:30
	공공부문의 측정	이슈 논의	1:30 - 3:10
	공공부문의 측정(계속)	이슈 논의	3:30 - 5:00
3/7	공공부문의 측정(계속)	이슈 논의	9:00 - 12:30
	금융상품 업데이트	응답 검토	1:30 - 3:10
	금융상품 업데이트(계속)	응답 검토	3:30 - 5:00

일자	주제	내용	시간
3/8	개선과제	이슈 논의	9:00 - 10:40
	공공부문의 특정금융상품	응답 검토 및 이슈 논의	11:00 - 12:30
	수익	이슈 논의	1:30 - 3:10
	수익(계속)	이슈 논의	3:30 - 5:00
3/9	사회보장급여 - 전략세션	비교환비용과의 연계를 포함한 주요 이슈 및 로드맵 논의	9:00 - 10:00
	비교환비용	응답 검토	10:00 - 10:40
	비교환비용(계속)	응답 검토	11:00 - 12:00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이슈의 요약	12:00 - 12:30

2 주요내용 요약

가. 공공부문의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IPSASB는 IPSAS 개념체계¹⁾의 발표, IFRS 13의 공정가치 정의 수정에 따라 다수의 IPSAS상 측정 관련 규정이 개념체계 및 IFRS 13과 불일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초안의 일부(목적, 범위)를 수정 승인하고, 차입원가의 비용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역사적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본 회의에서는 다루지지 않았다. 거래원가 이슈는 향후 공개초안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반면, 차입원가의 경우 CP(자문보고서) 논의에서 다루졌으며 최종 전액 비용화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차입원가의 비용화에 동의함에 따라 PV(예비견해) Chapter3²⁾가 승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화하고 있는 GFS와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IPSASB는 금번 정례회의 이후 차입원가의 비용화에 대해 재논의하고자 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였다.

- 1) IPSASB는 개념체계 제정 후 개별 IPSAS의 측정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IPSASB's 2014 Strategy and Work plan consultation(전략 및 업무계획 자문보고서)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2017년에 공공부문의 측정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 2) IPSASB가 모든 차입원가에 대해 예외(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 및 취득(건설)과 사용시점 사이에 발생한 차입원가에 대한 자본화 없이 비용화해야 한다는 예비견해다.

◆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 및 시사점

현재 국가회계기준은 “측정” 관련 개념체계 및 별도의 기준서가 없으며 개별 국가회계예규에서 최초 인식과 인식 후 평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련지침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용자 회계처리지침 등이 있다.

측정기준으로는 취득원가(역사적원가), 공정가액, 상각후취득원가, 상각후대체원가 등이 개별 자산·부채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나, 개념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측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유형자산 재평가의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개념이 IFRS 및 IPSAS 개념체계와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체적 평가방법의 인정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차입원가의 경우 현재 국가회계기준은 차입원가를 전액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지침으로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등이 있다.

나. 금융상품 IPSAS 28-30³⁾ 업데이트(Financial Instruments)

2014년 7월에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기초가 되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이 IFRS 9, ‘금융상품’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IPSASB의 전략목표 달성 및 IPSAS와 IFRS의 불필요한 차이로 인한 비용 역제를 위해 IFRS와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개초안(ED 62)의 SMC(Specific Matter for Comment) 및 응답분석에 대한 논의결과, 응답자들은 3개의 SMC에 대해 찬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지지하였으나, ED 62의 원칙(구분, 측정, 손상, 위험회피 요건)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IPSASB는 SMC 1~3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Staff와 Task Force(TF)에게 실무상 적용가능한 적절한 지침을 준비하여 6월 회의에서 발표하라고 지시하였다.

IPSASB는 회의에서 6개의 추가 쟁점(Other issues) 중 ‘저리용자금’(Concessionary Loans)⁴⁾과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Originated Credit Impaired Loans)의 관계 및 ‘저리용자금

3) ‘IPSAS 28 금융상품: 표시’,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PSAS 30 금융상품: 공시’

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대여금인 Concessionary Loans는 국가회계기준의 저리용자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리용자금’으로 번역하였다

(Concessionary Loans)의 대출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고, TF에 응답분석을 포함한 전반적 검토를 위임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은 향후 전화회의 등을 통해 금융상품 프로젝트의 TF 회의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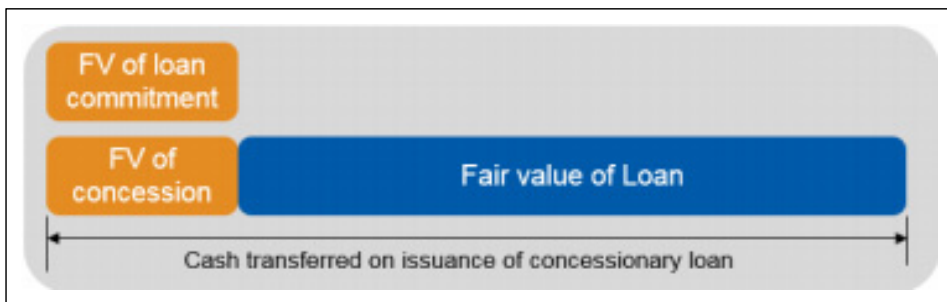
1) '저리용자금'과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의 관계

ED 62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저리용자금'과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Staff는 다음의 네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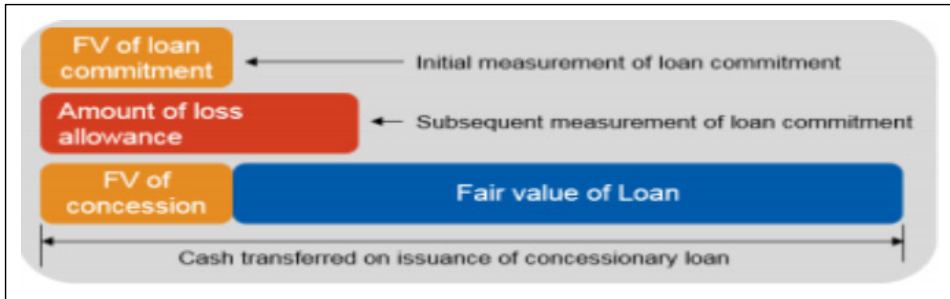
- ① 신용의 손상과 저리 효과(concession, 할인액)를 모든 경우에 분리
- ② 신용의 손상을 최초 인식 시 할인액(concession) 산정에 포함하는 실무 방편(practical expedient) 제공
- ③ 실무적으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 개발
- ④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응용방안(application) 개발 허용

2) 저리용자금의 대출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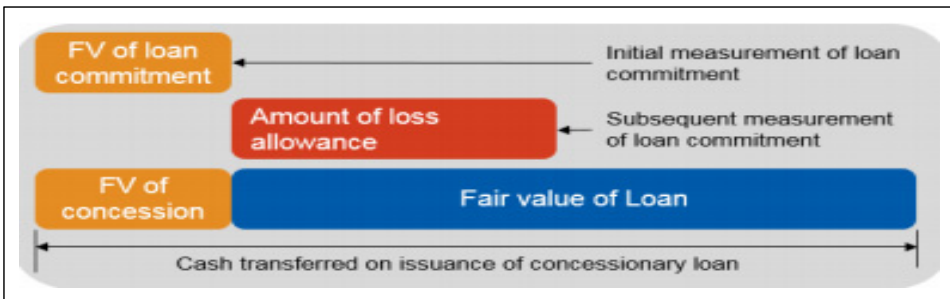
ED 62에 따라 최초 인식 시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대출약정(loop commitment)의 금액은 저리 용자금 발행 시점의 할인액의 가치와 거의 유사하다.



대출약정은 후속적으로 손실충당금(loss allowance)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cumulative amount of income)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손실충당금이 대출약정의 기초금액(혹은 할인액의 공정가치)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배부 처리가 필요하므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Staff는 여기에 대해 저리용자금이 발행되었을 때 손실충당금이 대여금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 ① 기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의 개발
- ② 저리용자금의 대출약정에 대한 측정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추가적인 지침 개발
- ③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응용방안(application) 개발 허용

〈금융상품 이슈 의결사항〉

의결요청 사항		의결결과 요약
SMC 1: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PSAS 29의 위험회피회계 옵션의 계속 적용 허용	(의결) 적용 허용
SMC 2:	Implementation Period 신규 기준서 전환을 위한 3년의 이행기간 제공	(의결) 이행기간 동의
SMC 3:	Transitional Provisions 공개초안 원안대로 경과규정 제시	(의결) 경과규정 동의
추가 쟁점 (Other issues)	① 저리융자금(Concessionary Loans)과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대 여금(Originated Credit Impaired Loans)의 관계	(의결이연) 각 사안별로 Task Force에 서 추가 심사 후 6월 안건 으로 상정
	② 저리융자금(Concessionary Loans)의 대출약정	
	③ 단기 채권의 할인 효과 무시(IFRS 15 Practical Expedient)	
	④ 비현금창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⑤ '실질적인' 지분상품인 경우('in substance' Equity Instrument) 에 대한 명확화	
	⑥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규정의 타 지침과의 비교	
기타	TF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슈 중 Staff의 응답분석결과가 있는 이슈 (Issues with a Staff Proposed Response for Task Force Consideration)	Staff 권고사항에 대해 Task Force가 검토
	Minor Issue	Staff가 검토하고, 적용이 필요한 경우 ED 62에 표시

◆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 및 시사점

국가회계기준과 IPSA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분류 및 측정기준, 손상 회계처리, 위험회피회계처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관련지침으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국고금, 용자 회계처리지침 등이 있다. 국가회계는 저리융자금을 별도의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IPSAS ED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기준서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기준의 적용 및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 유형에 따라 분류 및 측정기준을 매뉴얼 방식으로 제시하나, IPSAS의 경우 측정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접근방식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가회계기준은 상품의 유형(성격)에 따라 분류하므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이 혼합된 복합상품의

경우 적절한 측정방법을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손상의 경우 국가회계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IPSAS 등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 적용요건, 위험회피관계의 유형 등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회계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공정가액위험회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라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고,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향후 위험 회피회계 지침 개발을 검토할 경우 국제적 동향 분석은 지속하되, 원가효익 제약 및 이를 적용하는 국가회계실체의 범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회계의 ‘용자금(저리용자금)’은 조달이자율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IPSAS ED의 할인 대여금의 경우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저리용자금 구분과 정의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으므로 개정검토 시 IPSAS ED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약정, 금융자산·부채의 제거, 위험회피 회계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회계실체의 제한된 금융거래로 인한 차이일 수 있으므로 관련 현황에 대한 검토 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개선과제(Improvements)

IPSASB는 개별 IPSAS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를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IFRS 개정사항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ED 65는 IPSAS 특정 이슈와 IFRS 정합성 이슈를 다루며, SMC(Specific Matter for Comment)를 포함하지 않는다. IPSASB는 ED 65의 자문기간을 6월 중순으로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ED 65 : IPSAS 특정 이슈〉

IPSAS	개정사항
IPSAS 10, <i>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i> ; IPSAS 22, <i>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i> ; IPSAS 24, <i>Presentation of Budget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i>	해당 기준서 및 모든 기준서 간의 일관성(consistency)을 강화하기 위해 IPSAS에서 정의 내리지 않는 “primary financial statements”를 IPSAS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financial statements”로 모두 교체함

IPSAS	개정사항
IPSAS 16, <i>Investment Property</i>	회계실체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려고 하는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발 시 투자부동산의 이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함
IPSAS 16, <i>Investment Property</i> ; IPSAS 17, <i>Property, Plant, and Equipment</i>	IPSAS 33, <i>First-time Adoption of Accrual Basis IPSAS</i> 로 인한 수정사항들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공시관련 경과규정을 수정함
IPSAS 31, <i>Intangible Assets</i>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비한정이 아닌 한정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말하는 척도인지를 고려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확장
IPSAS 33, <i>First-time Adoption of Accrual Basis IPSAS</i>	비교 정보(comparative information)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발생주의 IPSAS의 도입 후 발행된 첫 번째 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지를 명확히 함
IPSAS 33, <i>First-time Adoption of Accrual Basis IPSAS</i>	확정급여형 제도와 관련하여 경험에 따른 조정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에 대한 경감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결론도출근거(Basis of Conclusion)와 이행지침(Implementation Guidance)을 업데이트함
IPSAS 34, <i>Separate Financial Statements</i>	투자 회계실체가 아닌 지배 회계실체(controlling entities)의 별도의 재무제표에서 피지배 회계실체(controlled entities)의 측정 및 공시 요건을 바로잡도록 수정함

〈ED 65 : IFRS 정합성 이슈〉

IPSAS	개정사항
IPSAS 16, <i>Investment Property</i>	자산을 투자부동산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제목을 업데이트함
IPSAS 2, <i>Cash Flow Statements</i>	재무제표의 사용자가 금융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를 요구함
IPSAS 16, <i>Investment Property</i>	사용목적변경(change in use)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와 사용목적변경(change in use)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수반한다는 원칙을 반영하도록 투자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개정함
IPSAS 36, <i>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i>	회계실체가 관계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IPSAS 4, <i>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i> ; IPSAS 33, <i>First-time Adoption of Accrual Basis IPSAS</i>	회계실체가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미리 지급 하거나 받은 대가로부터 발생하는 비화폐성자산 또는 비화폐성 부채를 인식할 때 해당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명확히 함

IPSAS	개정사항
IPSAS 37, <i>Joint Arrangements</i>	공동영업(joint operation)에서 이전에 보유한 지분(a previously held interest)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함
IPSAS 40, <i>Public Sector Combinations</i>	공동영업(joint operation)에서 이전에 보유한 지분(a previously held interest)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함
IPSAS 5, <i>Borrowing Costs</i>	적격자산이 의도된 대로 쓰이거나 팔릴 때 회계실체가 해당 적격자산을 얻기 위해 차입한 금액을 일반 차입액에 포함했는지를 명확히 함
IPSAS 39, <i>Employee Benefits</i>	회계실체가 현재 서비스원가와 계획의 변경 후 보고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의 순이자(net interest)를 결정하기 위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재측정으로부터 업데이트된 가정(assumptions)을 사용하도록 요구함

ED 66에 대해서는 SMC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동의하고, IPSAS 41 금융상품 업데이트 프로젝트에 따라 처리기간을 승인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서 적용되는 장기투자지분(IPSAS 36 개정사항)과 네거티브 보상(Negative Compensation)을 초래하는 선지급 기능(IPSAS 41 개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IPSAS	개정사항
IPSAS 36, <i>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i>	손상요건을 포함하는 IPSAS 41, 금융자산이 장기투자지분(long-term interests)에도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함 (ED 66)
IPSAS 41, <i>Financial Instruments</i>	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해 합리적인 네거티브 보상(negative compensation)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선지급 기능이 있는 특정 금융상품이 기타포괄손익을 통해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도록 구분요건을 수정 (ED 66)

라. 공공부문의특정금융상품(Public Sector Specific Financial Instruments)

공공부문의특정금융상품(PSSFI) 프로젝트 및 자문보고서는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ies)’으로 정의되는 실체(중앙정부 부처와 중앙은행)의 PSSFI에 대한 거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IPSASB는 통화당국에게 PSSFI 거래가 매우 중요함에도 관련된 공식적인(authoritative) 회계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SSFI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다.

IPSASB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금융상품 기준서와의 연계, 기존의 금융상품 원칙의 적용, 과거 IPSASB 의결 등을 이유로 다음 사항을 TF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Staff 제안사항	의결사항
<p>Proposal 1. Staff는 신규 금융상품 기준서가 승인된 이후에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응답 분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해 Task Force와 논의함 (PSSFI 지침의 개발 방향이 ED 62의 회계처리 규정에 달려있음)</p>	<p>(의결) 동의 TF에 위임</p>
<p>Proposal 2. 지침개발방향에 대한 Staff 권고안 동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SFI가 ED 62의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및 지침의 개발 형태의 유형에 따른 5개 제안 중 권고안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정의 충족시 금융상품 ED 62 포함, 적용사례 등으로 개발 - 금융상품 정의 미충족시 금융상품 기준서의 부록으로 개발 	<p>(논의) TF에 위임</p>
<p>Proposal 3. : 프로젝트의 관리방식에 관한 제안 IPSASB가 Task Force에 다음을 위임하는 방안에 동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에 대한 검토를 상세하게 수행 - 프로젝트 대안의 개발 - 공개초안의 개발 	<p>(의결) 동의 프로젝트 관리방식에 관한 제안 동의 추가로, IPSASB에 쟁점사항을 보고하도록 함</p>
<p>Proposal 4. 향후 프로젝트 범위의 조정에 대한 의견은 거부하는 것에 동의 여부(안건 9.2.1) CP 응답에 대한 전면 검토를 완료하면 프로젝트 범위 조정에 관한 응답은 받지 않을 예정임</p>	<p>(의결) 동의</p>

◆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 및 시사점

PSSFI를 보유하는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ies)의 경우 국가회계 실체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회계의 경우 관련 회계기준서가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센터는 PSSFI가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ED 62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PSSFI를 다루는 회계실체 및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동향 파악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PSSFI 관련 국가회계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시 IPSASB의 지침 개발방향 및 절차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 수익 및 비교환비용(Revenue & Non-exchange Expenses)

IPSASB는 기존 IPSAS⁵⁾의 미비점 해소 및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IPSAS를 대체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규 기준서를 개발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수익 인식 접근법 도입, 시간요건을 가진 이전거래와 관련된 IPSAS 23의 개정, 새로운 비교환비용(사회보장급여 제외) 인식 접근법 도입, 비계약적 채권과 비계약적 미지급금의 후속측정 기준 등의 보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IPSASB는 수익거래를 카테고리 A, B, C로 나누고, 카테고리 C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수행의무가 있는 거래, 카테고리 B는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나, 수행의무가 있는 거래, 카테고리 A는 수행의무가 없는 거래로 구분하여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개발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 IPSASB는 카테고리 C에 적용하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유사한 단일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과 카테고리 B에도 개발되는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만, 카테고리 B에 적용하는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SPOA)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하여 6월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IPSASB는 카테고리 A에 대해 개정된 IPSAS 23을 적용하되, 교환/비교환거래 구분체계가 아닌 수행의무가 유무에 따른 구분체계를 사용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으며, Staff에게 이러한 수익 모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예시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자본보조와 수증용역에 대한 논의는 다음 6월 정례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IPSASB 수익 프로젝트에 따른 새로운 구분〉

구분	카테고리 A (수행의무 없는 거래)	카테고리 B (계약 이외의 수행의무 있는 거래)	카테고리 C (계약에 따른 수행의무 있는 거래)
	비교환거래		교환거래
의결내용 (3월회의)	IPSAS 23 개정안 적용가능한 예시개발	공공부문수행의무 접근법 PSPOA 내용 개발	수행의무 접근법(IFRS 15) 기준서 개발

5) IPSAS 9,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IPSAS 11, ‘건설계약’,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비교환비용에 대해서는 주로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와 보편적 서비스(universally accessible service)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며, 예비 견해(preliminary view)⁶⁾에 대한 다수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은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기준서와 정합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 및 시사점

교환거래 및 비교환거래의 정의는 국가회계와 IPSAS가 유사하나 IPSAS가 보다 명확하다. 교환수익의 경우 거래유형 별로 인식기준이 매우 유사하나, 비교환수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IPSAS에 비해 국가회계기준*의 인식 시점이 같거나 더 늦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현실적 측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회계기준에서 비교환수익인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수익을 인식하나, 교환수익이 있다면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는 시점(과세기간말)에 수익을 인식한다.

IPSAS 23에서는 비교환거래로 인한 자원의 유입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고, 자원의 유입과 관련된 현재 의무(조건, conditions)를 충족한 때 인식하는 반면, 국가회계의 비교환수익 회계처리 지침에서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하며 벌금, 과료, 범칙금과 같이 납부시점, 즉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교환비용의 경우 IPSAS와 국가회계기준 간 비교환비용 인식 규정에 중요한 차이 없으나, 국가회계의 경우 비교환비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비용지침에서 포괄하여 설명한다. 또한, 비용 회계지침에 따라 비용을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과 현재의 IPSAS 수익비용 기준서는 교환 및 비교환거래를 구분하고 거래의 특성에 따라 수익비용을 구분하는 등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IPSASB에서 수익 및 비교환비용의 새로운 인식기준(수익의 경우 카테고리별 수익인식 접근법, 비교환 비용 의무접근법 등)을 도입하게 되면, 접근개념과 구조가 크게 달라지며 각 거래 유형별로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실제 국가회계의 사례를 IPSASB 기준(안)에 도입하여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회계 개선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집합적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비용인식은 서비스 제공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말함

3 향후계획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식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하여 IPSASB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것이며, 다음 회의는 2018년 6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2018년 5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IPSASB의 향후 전략과 업무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에 정도진 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년 1분기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정례회(3.6. ~ 3.9.), 미국〉

08 공지사항

1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8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팀 주요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국제협력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방안 연구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B) 제·개정 동향 파악 및 국내외 회계 기준 비교 분석 해외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발생주의 관련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결산교육팀 주요 업무	
국가재무결산 지원	국가회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이슈 대응 • 국가재무제표 작성 지원 • 감사원 및 국회 대응 지원 • 재무결산 중간점검 지원, 결산작성지침 작성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 국가회계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재무결산담당자 워크숍 개최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운영

재정통계팀 주요 업무		
재정통계 산출	공공기관 결산지원	공익법인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GFS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 통계 산출 • PSDS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 통계 산출 • 주요국 재정통계 동향 분석 • 재정통계 작성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통합결산서 작성 • 준정부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 결산 관련 질의회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개정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2 뉴스레터 이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4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 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12회 차에 걸쳐 실시됩니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이론 과정, 국가회계실무 과정, 재무결산실무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의 참가 신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를 통해 수강 희망 일정과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시에는 동일과정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신청건을 취소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18년 6월 ~ 11월(총 12회)
교육 지역	서울·세종·부산·광주·대구·대전·강릉·제주
대 상 자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각 회차당 100명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edu.kipf.re.kr (홈페이지 오픈 예정일 : '18. 5. 14.)

〈교육 일정〉

과 정	차 수	지 역	일 정	기 간	비 고
국가회계이론 과정	1차	서울	6. 20.(수) ~ 6. 21.(목)	2일	
	2차	대구	6. 27.(수) ~ 6. 28.(목)	2일	
	3차	광주	7. 4.(수) ~ 7. 5.(목)	2일	
	4차	부산	7. 10.(화) ~ 7. 11.(수)	2일	
	5차	대전	7. 18.(수) ~ 7. 19.(목)	2일	
	6차	서울	8. 22.(수) ~ 8. 23.(목)	2일	
	7차	제주	8. 29.(수) ~ 8. 30.(목)	2일	
	8차	강릉	9. 5.(수) ~ 9. 6.(목)	2일	
	9차	서울	9. 12.(수) ~ 9. 13.(목)	2일	
	10차	세종	10. 17.(수) ~ 10. 18.(목)	2일	
국가회계실무 과정	1차	서울	6. 22.(금)	1일	
	2차	대구	6. 29.(금)	1일	
	3차	광주	7. 6.(금)	1일	
	4차	부산	7. 12.(목)	1일	
	5차	대전	7. 20.(금)	1일	국유·물품 실무
	6차	서울	8. 24.(금)	1일	국유·물품 실무
	7차	제주	8. 31.(금)	1일	
	8차	강릉	9. 7.(금)	1일	
	9차	서울	9. 14.(금)	1일	
	10차	세종	10. 19.(금)	1일	
재무결산실무 과정	1차	서울	11. 8.(목) ~ 11. 9.(금)	2일	
	2차	세종	11. 15.(목) ~ 11. 16.(금)	2일	

■ **편 집**

정도진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이남주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국회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현지용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우원재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국회회계팀(뉴스레터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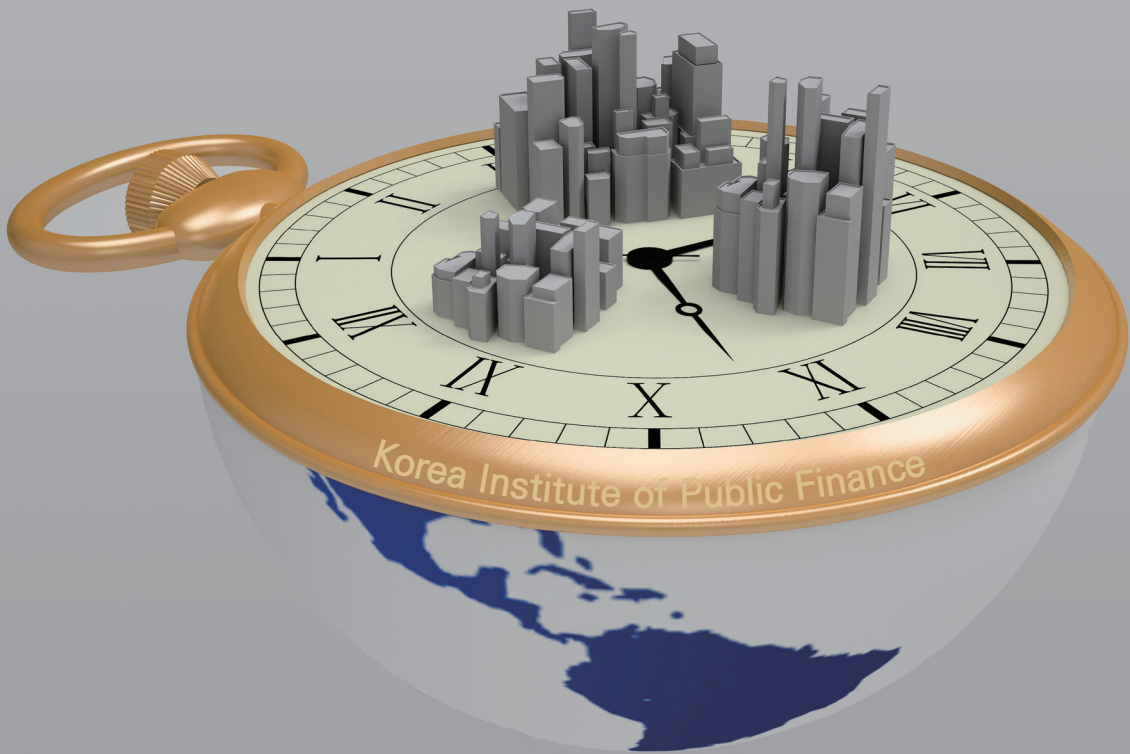
■ **발행인**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직무대행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8년 4월 20일 발행